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朝鮮·明 初期 軍令體系 整備過程의
비교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阮 鑫 佳

朝鮮·明 初期 軍令體系 整備過程의 비교

指導教授 吳 洙 彰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8 년 07 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阮 鑫 佳

阮鑫佳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8 년 07 월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국문초록

군령권은 정권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집권자가 군대에 대한 최고 통수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온 나라에 대한 통치권까지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군대를 조직화하고 군령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새로운 집권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 정비과정에서는 당시의 정국 상황과 군주권의 모습까지 뚜렷하게 엿볼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의 정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군령체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건국 초기 조선의 독특한 정치적 특징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명나라의 상황과 비교했다.

우선 開國 초기 중화체제하에 있던 조선과 명의 군령체계가 각자 어떠한 시대적·정치적 배경에서 성립되었는지, 또한 이 체계 속에 군령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건국 초기에 양국의 군 통수체제의 발전 지향점이 거의 유사하였음을 알아보았다. 첫째, 중앙군과 지방군을 모두 통합하는 경향이 상이하지 않았다. 둘째, 왕이나 황제가 친군세력을 세우고 그들을 다른 군사와 분리시키는 지향도 똑같았다. 셋째, 군령체계를 정비할 때 조선과 명 모두 재상이 가지고 있던 政治權과 軍事權을 분리시키고 또한 軍令權을 분산시키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즉, 정비·변화과정에서 조선과 명의 환경이나 상황이 상이했지만 결국 같은 지향점을 보였고, 이는 군사력이 정치와 긴밀하다는 보편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향점이 비슷해도 개국방식, 군주의 정치운영 이념과 운영 방식, 당시 정치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개혁 과정에서 각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조선 초기에는 중앙군에 대한 개편을 먼저 시작하고 세조대부터 지방군을 오위도총부에 함께 포함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반면에 명나라는 최고 군사기구를 설립할 당시에 중앙군과 지방군을 함께 포함시켰다. 둘째, 조선은 명과 달리 오래시간에 걸쳐 독립적인 친군세력을 만들게 되었다. 셋째, 政治·軍事權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發命權이 宰相에서 王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는데 명에서는 皇帝가 애초부터 發命權을 신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 군사기구의 정비과정, 政治·軍事權의 분리와 軍令權 分散의 과정

이 명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하였다. 조선 초기에 政治·軍事權의 분리는 태조대에 실시하지 않다가 태종대에야 점차적으로 실현되었고 걸리는 시간이 명보다 길며 軍令權 分散의 과정도 명 初期보다 매우 번거로운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군령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병조와 삼군진무소(오위도총부)의 양립구조가 나타났는데 명에서는 병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宦官 집단의 존재도 뚜렷했다. 이는 각 국의 정치적 특징과 군주의 군주권 강화방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명의 황제는 독재적인 권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황권에 부속하고 있는 환관을 이용하여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조선의 왕들은 전통적인 관료체제를 이용하여 군사 기구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 하며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그 왕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같은 동아시아 군주체제하에 왕권과 황권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왕권을 이용하여 펼치는 조선의 정치와 황권을 이용하여 펼치는 명의 정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 조선 초기, 명 초기, 군령체계, 정비과정, 비교, 군주권
학 번 : 2015-22279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양국 軍令體系의 整備와 變化相	6
제1절 朝鮮 太祖代 義興三軍府~世祖代 五衛都摠府를 중심으로 한 軍令體系	6
제2절 明 初期 大都督府 및 五軍都督府를 중심으로 한 軍令體系	19
제3장 양국 軍令體系 變化의 지향점과 차이점	27
제1절 中央軍·地方軍의 통수	27
제2절 親軍의 단독 설립	34
제3절 政治·軍事權 分離와 軍令權 分散	37
제4절 王權과 皇權 강화의 차이	48
제4장 결론	50
참고문헌	54
Abstract	57

표 목 차

[표 1] 朝鮮初期 軍令體系의 整備過程	17
[표 2] 朝鮮初期 義興三軍府~三軍鎭撫所의 소속 부대	27
[표 3] 朝鮮初期 五衛都摠府의 소속 부대	28
[표 4] 洪武時期 五軍都督府-都司-衛所	30
[표 5] 明 親軍衛 構成	36

제1장 서론

군대는 對內的으로 통치자의 지배를 뒷받침하고 對外的으로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무장역량을 조직화하고 군령의 작동을 이루기 위한 군령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새로운 집권자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체계에서 發命者, 發兵者와 掌兵者가 있는데 發命은 군대 지휘·통수에 대한 命을 發하는 것이고 發兵은 감독하거나 군령을 전달하는 뜻이고 掌兵은 실제로 군대를 관장하고 군령을 실시하는 것이다.¹⁾ 군사훈련의 계획·시행과 군사 동원 등 군령의 작동은 그들의 조화로 실현되는 것이었다. 한편 군령권이 정권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집권자가 군대에 대한 최고 통수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온 나라에 대한 통치권까지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發命權·發兵權·掌兵權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군령권의 배분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정국 상황과 군주권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엿볼 수가 있다. 때문에 군령체계는 정치사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연구대상이다.

여말선초에 새 왕조의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 태조가 義興三軍府를 설치하여 재상으로 하여금 군령권을 독점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조가 안정되면서 군주의 정책이 점차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군령권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병조 등이 군령체계에 들어가면서 군령 작동 시스템이 복잡해졌다. 한편 이 시기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반과 무반을 구별했고 결국 문반으로 하여금 무반을 통제하게 하는 역사적인 변동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이 군령체계의 정비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건국 당시의 최고 군사기구인 의흥삼군부가 잇따른 변을 맞이하여 태종·세종·문종·단종을 거쳐 세조대에 이르면 주로 무반으로 채워져 있었던 오위도총부로 개편되었으며 문반을 중심으로 한 병조가 그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리하여 선초의 군령 작동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건국 당시의 유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중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1) 尹薰杓,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192-194쪽.

중화문명을 공유하려는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²⁾ 실제 《朝鮮王朝實錄》에는 새 왕조 군령체계를 정비하면서 唐宋을 포함한 中國 古制까지 參用하려는 朝鮮의 노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초기 “時王之制” 수용은 타시기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현상이다.³⁾ “시왕지제”의 차원에서 보면 조선이 건국된 후에 군 통수체제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의 제도를 의식해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조선과 명의 군령체계는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⁵⁾ 그러나 다른 한편 문중양이 조선 초기 유학자들이 문물제도 정비 과정에서 ‘조선의 고유성’을 함께 강조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⁶⁾ 조선과 중국은 제도상 많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조선과 명의 군령체계를 비교하여 둘이 어떻게 비슷한지 어떻게 다른지, 즉 공통점과 차이점은 정치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만하다.

明 初期의 軍令體系에서 주원장이 설립한 大都督府와 五軍都督府의 존재가 특별히 중요하다. 至正 21년(1361)에 주원장이 군 통수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도독부를 만들었다. 왕조가 안정되면서 이 최고 군사기구의 軍權을 억제하기 위하여 황제인 주원장이 대도독부를 오군도독부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병부가 군령권의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군령체계에서 오군도독부의 위상이 계속 떨어져 갔다. 영락시기부터 기구가 더 많은 격변을 겪게 되었으며 환관이 군령체계의 중추로 부상된 후에 명나라의 군령 작동 시스템이 마침내 정착되었다.

2) 장인성, 2014, <중화체제와 ‘사대’-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 191쪽.

3) 최중석, 2010, <조선초기 “시왕지제(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52, 6쪽.

4) 《世宗實錄》 世宗 16年 10月 庚午. “上大護軍者, 臨時受命將軍之職也, 上大護軍及三軍親從, 依中朝制, 稱中軍總管院, 上護軍、大護軍、護軍, 左右軍倣此.”

5) 이헌창은 거시적 차원에서 조선과 중국의 정치제도를 같은 동양식 절대군주제로 보고 있다. (이헌창, 2017,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론>, 《경제사학》 41, 244-256쪽.)

6) 문중양, 2013,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46-47쪽.

조선초기 군제사 연구 중에 군령체계에 관한 성과가 많다. 閔賢九(1983)는 朝鮮初期 軍令機構의 整備과정을 분석하여 건국초기의 첫 군사기구인 의흥삼군부의 성립과 폐지를 살펴본 후에 어떻게 승추부-삼군진무소-오위진무소-오위도총부로 개편되어갔는지를 검토하고 그들의 軍令體系상의 위치와 병조의 관계를 함께 밝혔다.⁷⁾ 韓忠熙(1994)의 <朝鮮初(태조2년~태종1년) 義興三軍府研究>⁸⁾에서는 의흥삼군부의 조직, 운영, 기능과 정치적 위상 등이 상세히 검토되었다. 李在勳(2005)의 <朝鮮 太宗代 三軍鎮撫所의 成立과 國王의 兵權掌握>⁹⁾이라는 논문에서는 三軍鎮撫所를 정점으로 한 군 지휘 체제의 형성과정, 삼군진무소의 조직과 기능·정치적 위상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군령체계 속 각 군사기구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으나, 군령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즉 군령 작동과 그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주로 기구 자체를 중심으로 봤고 거의 정치사와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에서는 軍令機構(의흥삼군부, 삼군진무소, 오위진무소, 오위도총부), 軍政機構(병조) 등 개념어가 쓰여 있는데 이는 다소 결함이 있다, 그것들은 세계사나 중국사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 인증도가 높지 않은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구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한 기구가 군령업무나 군정업무만¹⁰⁾ 관장하는 상황이 매우 희박하고 단순히 기구의 핵심 업무를 기준으로 그 기구의 성격을 규정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봉건왕조의 발전 속에 군사권 특히 군령권을 한 기구에 집중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군령기구나 군정기구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더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7)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8) 韓忠熙, 1994, <朝鮮初(태조2년~태종1년) 義興三軍府研究>, 《계명사학》 5.

9) 李在勳, 2005, <朝鮮 太宗代 三軍鎮撫所의 成立과 國王의 兵權掌握>, 《史叢》 61.

10) 권영국이 군정업무와 군령업무에 대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군사업무는 크게 군정업무와 군령업무로 구분되는데, 군정업무는 군대의 편성과 조직·보충, 동원·兵役·인사·복무·병기 등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행정업무이며, 군령업무는 군의 통수작용에 관한 것으로 실제적인 군대의 동원 및 지휘·통솔과 관련되는 업무이다. (권영국, 2009, <고려전기 군정·군령기구의 정비>, 《역사와 현실》 73, 128쪽.)

명초 대도독부와 오군도독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구의 설립, 역할 및 변화를 살펴왔다. 그 중에 南炳文(1983)은 <明初軍制初探>¹¹⁾을 통하여 대도독부의 설립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주원장의 軍權 一元化를 추구하는 의도를 지적하였다. 范中義(1998)의 <論明代軍制的演變>¹²⁾은 명나라의 군사기구, 병역제도, 군량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李新峰(2001)의 <明代大都督府略論>¹³⁾는 至正 21년(1361)부터 洪武 13년(1380)까지에 존재했던 大都督府의 설립, 권력 확충, 권력 약화의 과정을 살펴왔다. 여태까지 명의 최고 군사기구를 연구할 때 주로 대도독부를 중심으로 해 왔으며¹⁴⁾ 대도독부의 후신인 오군도독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는 오군도독부가 영락시기에 이르러 점차 내실이 없는 기구가 되었으며 연구의 초점이 대도독부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군도독부의 변화상은 명나라의 정치제도와 황권의 양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치사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대도독부와 오군도독부를 전체적인 군령체계와 함께 검토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즉 기구를 비롯한 군령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군령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또한 기구의 변화에 따라 군령 작동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 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 정리 결과 한국이든 중국이든 군령 작동 시스템과 왕조 흐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 통수체계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군사훈련·동원을 위한 군령 시스템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군사기구를 군제사의 틀에서만 살펴왔고 그 결과 정치적 특징 및 군주권의 변화와 함께 검토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군령권과 정권 사이에 상당히 긴밀한

11) 南炳文, 1983, <明初軍制初探>, 《南開史學》 1,2.

12) 范中義, 1998, <論明代軍制的演變>, 《中國史研究》 4.

13) 李新峰, 2001, <明代大都督府略論>, 《明清論叢》 2.

14) 大都督府에 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주로 주원장의 군사집단, 군사적 사상과 집권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 黃阿明은 元末明初에 주원장을 핵심으로 한 군사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黃阿明, 2010, <明建國前朱元璋集團的軍事領導機構及其演變>, 《史林》 3.) 陳時龍은 중원장이 대도독부를 설립하는 의도 또한 군사조직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家天下’사상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陳時龍, 2003, <論大都督府之創設>, 《軍事歷史研究》.)

관계가 있으므로 군제사와 정치사를 연관시키면 당시 정치의 양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모두 일국사적 틀에서만 당시의 군 통수체제를 보고 있으며 양국의 군령체계를 비교사적으로 보는 연구는 없었다. 이것은 체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정비와 변화 속에 담겨 있는 당시 조선과 명의 개별적인 정치상과 동아시아 군주체제의 普遍的인 성격을 볼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의 정치적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비교사 차원에서 군령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조선 초기의 정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군령체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하여 건국 초기 조선의 독특한 정치적 특징을 명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것이다. 건국 초기 조선과 명나라 군령 작동 시스템의 정비·변화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집권자들의 정치적 의도와 정치 수단을 이해해 볼 것이다. 나아가 開國 초기 중화체제하에 있었던 조선과 명의 정치상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군령 작동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 조선초기의 군령체계의 정비과정을 살펴보고 명나라의 大都督府·五軍都督府가 어떠한 시대적·정치적 배경에서 설립되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령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또 이를 다루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초와 명초의 군령체계 정비과정 속에 나타나는 지향점과 특징을 세부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비교를 통하여 같은 동아시아 군주체제하에 나타났던 군령체계와 그들의 정비·변화과정에서 어떠한 보편적인 양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어떠한 독자적인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왕조의 정치가 어떻게 다르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朝鮮 初期과 明 初期의 政治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2장 양국 軍令體系의 整備와 變化相

제1절 朝鮮 太祖代 義興三軍府~世祖代 五衛都摠府를 중심으로 한 軍令體系

朝鮮의 建國은 고려말의 급진개혁파인 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禡王 14년(1388) 威化島回軍 후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를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고려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최고 군사기구인 三軍都摠制府의 설치하는 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급진개혁파는 고려 말의 절제사들이 사적으로 軍民을 동원 및 예속하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발생한 군사력의 약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¹⁵⁾ 이것이 이성계 일파가 주도하는 軍令體系의 一元化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⁶⁾ 洪武 25년(1392) 7월에 이성계는 급진개혁파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 정치기관인 都評議使司 관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즉위했으며¹⁷⁾ 이와 동시에 급진개혁파 사대부들이 주도한 군 통수권 체제개혁도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조는 鄭道傳、趙浚、南閔을 상당히 신임하였고 그들에 政·兵 重任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 재신을 중심으로 한 재상 중심의 정치가 펼쳐지게 되었다. 왕조교체기의 불가피한 다원적인 군사체제운영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¹⁸⁾ 동왕 2년(1393) 9월 태조는 삼군도총제부를 義興三軍府로 개편했고¹⁹⁾ 親軍인 義興親軍衛까지 ‘公家之兵’으로 개편하여 義興三軍府에 부속시켰다.²⁰⁾ 동시에 재상인 정도전을 의흥삼군부의 최고 책임자인 판사로 임명하였다. 태조 3년(1394) 2월에는 정도전이 府衛制 개혁안을 제출하여 고려말에 완료하지 못했던 衛兵制의 일원화 작업을 계속하였다. 정도전의 개혁을 통해 10위의 상장군으로부터 10道 州

15) 尹薰杓,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157-158쪽.

16) 이재훈, 2003, <태종 세종대의 삼군도총제부>, 《사학연구》 69, 46쪽.

17) 오수창, 2016, <조선왕조 개창의 형식과 논리-선양론(禪讓論)과 추대 사실의 검토>, 《동방학지》 176, 103-109쪽.

18) 한충희, 1994, <조선초(태조2년~태종1년) 義興三軍府 연구>, 《계명사학》 5, 38쪽.

19) 《太祖實錄》 太祖 2年 9月 丙辰. “改三軍摠制府爲義興三軍府, 罷重房.”

20) 尹薰杓, 2000, 앞 책, 188쪽.

郡의 番上兵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흥삼군부에 부속되었으며 재상이 판사직을 맡는 원칙도 정해졌다.²¹⁾ 새 기구인 의흥삼군부는 무반과 군사를 동원·지휘·감독하는 군령기능, 궁궐 숙위·도성경비·진법훈련·군제개편을 주관하고 무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광범한 군정기능을 가지고 있었다,²²⁾ 즉 태조대의 명실상부한 최고 군사기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편은 경성에 있는 군사인 중앙군과 番上兵에 대한 통수만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방에 있는 영진군, 익군 등 군사를 통수하지 못했다. 즉 지방에 있는 陸守兵과 騎船兵은 의흥삼군부와 별다른 유기적 영속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로 군령체계를 가져 있어 중앙의 의흥삼군부의 개입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흥삼군부의 최고 지휘관인 판사(發兵者)는 동시에 정치의 주도자인 재상(發命者)이기 때문에 재상이 엄청난 정치권력과 군사권을 가지게 되었다.²³⁾ 태조대 의흥삼군부 시기의 발병 절차는 재상이 왕의 허락을 받아 군령을 三軍인 中軍, 左軍, 右軍의 절제사를 통해²⁴⁾ 각 위의 上·大將軍(都尉使·都尉僉事)한테 하달했던 것이다.²⁵⁾ 최고

21) 《朝鮮經國典》 上, 治典, 軍官. “國家損益唐府兵之法 立十衛 每一衛率五領自上將軍以下至將軍 自中郎將以下至尉正 統之義興三軍府 令宰相判府事判諸衛事以重御輕 以小屬大 體統嚴矣 每道置節制使 其州郡之兵 番上宿衛 亦內外相制之義 而屬之義興三軍府鎮撫所者 以內御外之義也.”

22) 한충희, 1994, <조선초(태조2년 ~ 태종1년) 義興三軍府 연구>, 《계명사학》 5, 38쪽.

23) 윤훈표는 “정도전이 ‘宰相掌發命之權’의 원칙으로 군 통수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發命·發兵·掌兵은 각각 宰相·摠制·受命以行者가 나누어 맡는다. 즉 재상이 發命者에 해당하고 摠制使(대체로 大將軍 이상과 節制使)가 發兵者에 해당하고 受命以行者(대체로 將軍·兵馬使)가 掌兵者로 해당한다”라고 밝혀져 있다. (尹薰杓,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192-195쪽.)

24) 《太祖實錄》 太祖 2年 10月 己丑. “判義興三軍府事鄭道傳等上書曰: 改下諸節制使所領軍官職銜. 以永安君爲三軍府中軍節制使, 撫安君 芳蕃爲左軍節制使, 興安君 李濟爲右軍節制使.”

25) 개국 당시에 각 위장이 여전히 고려의 전통을 이어 대장군·상장군으로 일컫는데 그 후에 도위사·도위첨사로 개칭되었다.

《太祖實錄》 太祖 1年 7月 丁未. “義興親軍左衛·右衛、鷹揚衛、金吾衛左·右衛、神虎衛、興威衛、備巡衛、千牛衛、監門衛等十衛: 上將軍各一, 正三品; 大將軍各二, 從三品.”

《太祖實錄》 太祖 3年 2月 己亥. “上將軍改都尉使, 大將軍改都尉僉事, 都護諸衛將軍改中軍司馬、左軍司馬、右軍司馬.”

군사기구인 의흥삼군부는 재상의 명령을 하달하는 것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래 가지 못했다. 군 통수체제의 일원화 과정에서 정도전이 주도한 私兵革罷가 이방원으로 하여금 제1차 王子의 亂을 야기하게 하였다. 권력 탈취의 성공에 따라 이방원이 政敵인 정도전을 제거했고 태조를 퇴위시켰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이방원은 정권을 장악한 후에 재상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령권을 급격히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우선 정종 2년(1400) 4월에 관제개혁을 통하여 省宰이상으로 의흥삼군부의 使司의 직책을 맡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軍國의 政事를 의논하게 하여 軍事가 있으면 도평의사사가 보고하여 국왕의 명령을 의흥삼군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左·中·右 삼군에 각각 총제 1명을 설치하고 軍政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담당 군의 업무만 담당하게 하였다.²⁶⁾ 知三軍, 同知三軍, 簽書, 學士 등이 합좌해서 군국의 정사를 의논하여 군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종래 재상이 단독적으로 발명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 개혁으로 의흥삼군부의 독자적인 발명 역할이 바뀌지 않았지만 移命過程이 달랐다. 원래 판사인 재상이 발명자이자 발명자로서 군주나 廟堂을 거친 후에 직접 명령을 장병자에게 내려 군대를 동원하였지만, 이제 의흥삼군부는 도평의사사를 통해 군령을 받아 출령했던 것이다.

태종이 즉위한 이후 三軍府가 承樞府로 개편되었다.²⁷⁾ 정치적 안정과 집권화를 촉진하려고 하던 태종은 처음에 여전히 정승으로 하여금 승추부의 判事를 겸하게 하였다.²⁸⁾ 이는 재상에게 다시 지나친 軍權을 부여하였다. 즉 명을 발하는 발명권과 군령을 전달하는 출납기능이 다시금 통합되었다. 그 다음에 태종 3년(1403) 6월에 삼군에 각각 都摠制府를 설치하였

26) 《定宗實錄》 定宗 2年 4月 辛丑. “自今罷中樞, 以三軍府爲祿官, 省宰已上可兼者, 卽兼節制, 其祿官則依中樞例, 知三軍、同知三軍、簽書、學士各一員, 皆以或文或武, 善謀能斷者爲之, 帶使司銜合坐, 與議軍國之政. 凡有軍事, 使司承稟上命, 移三軍府, 以應宰相發命之法. 諸節制使, 除省宰兼外, 三軍各一爲祿官. 雖曾經中樞, 位在知同知之上, 然只爲一軍節制, 非統三軍之比, 不許帶使司銜, 直坐本府, 以治京外軍務, 以尊摠制之職. 諸衛上、大將軍, 合屬三軍府, 以供其事; 諸節制使與上、大將軍以下, 分番宿衛, 以備不虞, 以供掌兵之任, 有變則節制以下, 受命而行.”

27) 《太宗實錄》 太宗 1年 7月 庚子. “義興三軍府爲承樞府.”

28) 《太宗實錄》 太宗 2年 11月 庚寅. “以左政丞河崙兼判承樞府事, 右政丞李茂兼判承樞府事.”

고 十司를 分掌하게 하였다.²⁹⁾ 이에 따라 十司에 대한 掌兵之任을 담당하는 총제·동지총제·첨총제 등이³⁰⁾ 별도의 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십사에 대한 승추부의 역할이 다소 약화되었다. 군령출납 때에 삼군도총제부의 각 군 도총제가 승추부에서 합의하면서 명령을 전달받고 각 군별로 분속되어 있는 十司의 각각에 다시 傳令하는 방식으로 군령을 하달했다. 하지만 승추부 판사직을 겸임한 재상이 다시금 태조대의 의흥삼군부시기처럼 명을 발하는 자가 되었으며 재상의 권력이 잠시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태종 5년(1405)에 六曹가 2품 관아로 승격되고 승추부가 병조에 병합되면서³¹⁾ 군령체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屬衙門制度의 수립으로 군에 대한 기밀 사항이나 친히 아될 일을 재신기구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서 제도상으로 재상이 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³²⁾ 즉 ‘宰相掌發命之權’이라는 원칙이 폐지되었으며 군령 移命過程에서 재상이 소외되었다. 병조가 승추부를 흡수하면서 원래 군정업무를 주로 맡은 병조가 군령권도 갖게 되었고 병조가 실질적으로 최고군사기구로 부상하였다. 이에 태종 9년(1409) 8월에 병조의 군정과 군령의 총관을 막기 위해 그와 橫的 관계를 맺고 있었던 三軍鎮撫所가 설치되었다.³³⁾

한편 삼군진무소의 설치에서 前朝에서 보지 못했던 체제적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조선왕조의 관료체제는 고려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조선적 관료체제는 점차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 武科가 없는 상태에서 집권자가 文臣과 武臣의 차이를 의식하고 있을 수가 있었지만, 기구를 설치하거나 관원을 임명했을 때에 결국 文과 武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의 집권자는 관료체제를 개편하면서 武科를 만들었으며 제

29) 《太宗實錄》 太宗 3年 6月 乙亥. “三軍各設都摠制府, 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僉摠制二. 前此, 稱承樞府某軍摠制, 今各立其府, 不係於承樞府, 軍務則依舊統焉.”

30) 《太宗實錄》 太宗 2年 6月 癸亥. “置三軍都摠制以下官. 每一軍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 以十司分屬之, 皆謂之甲士.”

31) 《太宗實錄》 太宗 5年 1月 壬子. “承樞府歸之兵曹.”

32) 柳昌奎, 1992, <太宗代 軍指揮體系>,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從(上)》, 607쪽.

33) 《太宗實錄》 太宗 9年 8月 庚戌. “置三軍鎮撫所. 時兵曹摠軍政, 上欲於傳位之後, 親掌軍政, 乃曰: ‘兵曹皆以儒臣充選, 不宜於指畫軍事.’ ”

도상 文班·武班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물론 전통을 바꾸려는 이 과정이 길 수밖에 없었다. 여말의 삼군도총제부는 물론이고 건국 초기의 의흥삼군부와 그 후의 승추부 때도 마찬가지로 文班·武班에 대한 구별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결국 왕권이 안정해지면서 태종이 文과 武를 구별해야 한다고 의식했다. 왕이 병조를 모두 儒臣으로 뽑아 채우니 軍事를 지휘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하여³⁴⁾ 무반으로 채워 있는 삼군진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업무의 특수성과 관리의 전문성을 짐작하여 군령체계에서 무반으로 구성된 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왕의 뜻이다.

鎭撫所가 일시적으로 義興府로 개칭되어 태종 12년(1412) 혁파되었다가 태종 14년경에 다시 鎭撫所로 復設되었으며 결국 병조와 양립하면서 군령을 처리했다.³⁵⁾ 병조는 주로 銓選·儀仗·差備·稟命·移文 등 일을 맡고 의흥부(삼군진무소)는 주로 군사를 고찰하는 것과, 省記·監申하는 것과, 巡牌를 출납하는 것과, 稟名·出令하는 일을 맡았다.³⁶⁾ 즉 원칙적으로 인사, 의식 등 대체로 군정에 관한 사항을 병조가 장악하는데 비해 출령 등 군령사항을 의흥부가 장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체제하에서 군령체계는 의흥부(삼군진무소)·삼군도총제부·십사의 선을 따라 잡혀지고 있었지만, 군정을 장악하는 병조가 의흥부와 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³⁷⁾ 태종대 의흥부(삼군진무소) 시기에 군령 작동은 아래 기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무릇 三軍의 號令은 병조와 의흥부에서 함께 王旨를 품하여 각각 行移하고, 각 군의 都摠制府는 각기 그 府에서 行移하고, 各衛의 摠制와 各衛의 上護軍·대大護軍은 의흥부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위급한 때를 당하면 의흥부에서 친히 왕지를 품하여, 王府에 간직해 있는 織紋驪虞旗를 받아 靑문에 세우고, 角을 붙여, 入番 摠制와 各衛의 上護軍·大護軍·護軍으로 하여금 戒嚴하게

34) 위 기사.

35)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279-280쪽.

36) 《太宗實錄》 太宗 9年 10月 乙丑. “請令兵曹掌銓選、儀仗差備、稟命移文等事, 義興府掌考察軍士、省記監申、巡牌出納、稟命出令等事.”

37) 閔賢九, 앞 책, 278-279쪽.

하고, 出番 各軍摠制와 各衛의 상호군·대호군·호군이 角聲을 듣고 즉시 靑門 밖에 나아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상께서 특별히 將帥를 명하고, 친히 事機를 주고, 각각 織紋旗를 주면, 곧 나와서 의흥부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각위의 상호군·대호군·호군은 그 군의 織紋旗를 본 연후에 명령을 달려오게 하고, 만일 의흥부가 織紋旗가 없이 명령을 내린 자나, 각위의 상호군·대호군·호군이 그 군의 織紋旗를 보지 않고 명령에 달려간 자, 병조와 의흥부의 明文이 없이 사사로 군사를 모은 자는 모두 모역으로 논하고, 만일 습을 범한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실인 자는 3등을 뛰어 벼슬로 상을 주고, 또 범인의 가산과 노비·전지로 상을 주며, 무고한 자는 반좌율에 의하소서.”³⁸⁾

이상의 기사를 보면 태종대에 이르러 육조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흥부(삼군진무소)가 더 이상 독자적인 군령 출납 기능을 가지지 못했다. 병조와 같이 왕명을 받아 도총제부를 통해 각 위한테 출령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단 긴급한 군사 집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군령체계상에 의흥부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쟁이나 習陣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임명된 장수는 의흥부의 총지휘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병조와의 양립구조에서 의흥부(태종 14년쯤 삼군진무소)의 위상이 계속 떨어져 갔다. 上王 태종은 자신의 출납 업무를 병조에 맡겼는데 이로 인해 자연히 군사 부문에 대한 명령도 병조가 전담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⁹⁾ 마침내 이러한 상황이 관행으로 되어 버렸다. 태종이 승하한

38) 《太宗實錄》 太宗 9年 10月 乙丑. “凡三軍號令, 兵曹及義興府同稟王旨, 俱各行移各軍都摠制府, 各其府行移各衛摠制及各其衛上大護軍, 聽義興府號令. 當危急之時, 義興府親稟王旨, 受王府所藏織紋驪虞旗, 立於闕門吹角, 令入番摠制、各衛上大護軍、護軍, 戒嚴出番. 各軍摠制及各衛上大護軍、護軍聞角聲, 卽詣闕門外, 各率軍士, 屯駐待令. 上特命將帥, 親授事機, 各賜織紋旗乃出, 聽義興府號令. 各衛上大護軍及護軍, 見其軍織紋旗, 然後趨令. 若義興府無驪虞旗而出令者, 各衛上大護軍及護軍, 不見其軍織紋旗而趨令者, 無兵曹義興府明文而私聚軍士者, 皆以謀逆論; 如有犯令者, 許諸人陳告; 實者, 超三等賞職, 將犯人家產奴婢田地給賞; 誣告者, 反坐.”

다음에도 小規模의 軍令關係 傳命이 있으면 兵曹郎廳이 承政院에 承命하고, 都鎮撫 진무가 병조에 가서 명을 받는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軍令上 移文의 권력을 갖는 병조가 삼군에 직접 移文하면서 진무소에는 移文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⁴⁰⁾

결국 세종 14년(1432)에 진무소가 불만을 표출하여 상소를 하였다.

三軍都鎮撫에서 아뢰기를, “그 처음에는 義興三軍府와 承樞府를 義興府로 일컬어 오로지 軍事만 맡게 했는데, 이제는 이미 義興府를 개혁하여 다시 鎮撫所를 세워서 兵曹와 같이 軍事를 맡게 하니, 그 미진한 事宜를 마련하여 아뢰겠습니다.

1. 이보다 먼저는 모든 軍令은 큰 일은 병조의 堂上官이 도진무와 함께 나아가서 명령을 받았으며, 작은 일은 병조의 郎廳과 鎮撫가 함께 承政院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게 되고, 兩司에서 반드시 함께 명령을 받은 후에 이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1. ...청컨대 六曹에서 敎命을 받을 때에 무릇 軍務의 범령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例에 의거하여 本所로 공문을 보내소서.

1. 鎮撫의 임무는 군사를 살피는 것을 맡았으니 실로 군중의 맡은 바인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범죄가 있으면 鎮撫에서도 또한 그전의 例에 의거하여 義禁府에 내려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매, 詳定所에 내려서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삼가 周나라 제도를 살펴보건대, 왕을 좌우에서 시위하는 것은 虎賁氏·師氏의 소속인데도, 大司馬가 그 명령을 맡았으며, 漢나라 未央宮과 建章宮의 兵은 尉가 있어 이를 관장하고, 城門의 兵은 都尉가 이를 관장했는데도, 大司馬가 그 출입을 맡았으며, 唐나라 초기에는 禁兵 16衛와 折衝·果毅를 上將軍·大將軍으로 삼고 통솔했는데도, 兵部에서 실상 이를 호령했으며, 宋나라는 侍衛하는 親兵을 殿前司의 三班이 이를 통솔했는데도, 樞密院에서

39) 李在勳, 2005, <朝鮮 太宗代 三軍鎮撫所의 成立과 國王의 兵權掌握>, 《史叢》 61, 57쪽.

40) 閔賢九, 1983, 앞 책, 283쪽.

실상 이를 進退시켰으니, 이것은 역대의 兵制가 禁兵을 오로지 통솔함으로서, 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없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本朝의 鎮撫所는 직책이 兵權을 맡았는데, 만약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곳이 없다면, 이른바 兵權을 분산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鎭撫所는 곧 周나라의 虎賁·사씨이며, 한나라의 未央宮·建章宮의 두 宮衛이며, 당나라의 16衛의 上將軍·大將軍이며, 송나라의 殿前司인 것이며, 지금의 兵曹은 곧 周나라·한나라의 大司馬이며, 당나라의 兵部이며, 송나라의 樞密院인 것입니다. 鎭撫所로 하여금 兵曹의 소속이 되어 그 制命을 받게 한다면, 역대의 兵權은 한 곳에 맡기지 않는 뜻에 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⁴¹⁾

즉 鎭撫所는 承命과 移文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해야 하는 권력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鎭撫所의 상소는 오히려 그의 의도와 상반되게 兵曹이 주장하는 隸屬論을 유발시켰다. 위 기사를 보면 兵曹은 古制에 비추어 볼 때에 鎭撫所가 마땅히 兵曹의 하위기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응하였다. 이러한 쟁점의 발전 와중에 세종의 저지로 삼군鎭撫所가 兵曹의 예하가 되지는 않았지만 軍令出納上 鎭撫所의 역할은 그대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三軍鎭撫所는 세종대 전반을 거쳐서 그 후 文宗·端宗代에도 마찬가지로 軍令上의 機能을 가지고 존속했다.

한편 삼군鎭撫所에 부속하고 있는 중앙군의 部隊編成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세종 말에 中央軍의 확장으로 원래의 十司가 十二司로 바뀌었고 또 軍事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文宗이 왕 1년(1451)에 訓練陣法의 수행을 맞추기 위하여 十二司를 五司로 개편하였다.⁴²⁾ 조선 초기 군령체계의 정

41) 《世宗實錄》 世宗 14年 9月 壬申. “三軍都鎭撫啓: ‘厥初義興三軍府、承樞府, 稱爲義興府, 專掌軍事. 今已革義興府, 復立鎭撫所, 與兵曹同掌, 其未盡事宜, 磨勘以啓...’ 僉曰: ‘謹按周制, 衛王左右者, 虎賁氏師氏之屬, 而大司馬制其命. 漢 未央宮、建章兵有尉掌之, 城門兵都尉掌之, 而大司馬司其出入, 唐初禁兵十六衛, 折衝果毅上將軍大將軍統之, 而兵部實號令之; 宋侍衛親兵殿前司三班摠之, 而樞密院實進退之. 是則歷代兵制, 無有專摠禁兵, 而上無維制之者. 本朝鎭撫所職掌兵柄, 若無稟制之處, 非所謂兵權散主也. 今之鎭撫所, 卽周之虎賁師氏、漢之未央·建章兩宮衛、唐十六衛上大將軍、宋殿前司也. 今之兵曹, 卽周、漢之大司馬、唐之兵部、宋之樞密院也. 令鎭撫所爲兵曹所屬, 受其制命, 合於歷代兵權不專之義.’ ”

42) 《文宗實錄》 文宗 1年 6月 丙戌.

비는 世祖代에 이르러 마무리되었다. 세조 3년(1457) 4월에 왕이 中央軍 군사인 五司와 각 도에 있는 地方軍을 併합시켰고 三軍鎮撫所가 五衛鎮撫所로 바뀌었으며 각 衛로 하여금 새로운 부대를 分掌하게 하였다.⁴³⁾ 이에 따라 건국 이래 지속된 三軍이라는 中央軍 편성이 없어졌고 五衛陣法과 알맞은 五衛편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中央軍과 地方軍이 원칙적으로 한 軍령체계에 통합되었다. 다만 새로운 軍령체계가 나타났음에도 시대적 흐름에 의해 발병권의 행사에서 진무소가 계속 병조의 영향을 받았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종대부터 議政府署事制로 인해 계속 커지는 의정부 대신들의 정치권력을 억제하고자 六曹直啓制를 단행했다.⁴⁴⁾ 이 과정에서 병조는 軍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서서 모든 移命過程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관장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력은 대단히 비대했고 따라서 軍령상의 지위도 높았다.⁴⁵⁾ 다음 기사는 세조 3년부터 軍령출납의 상황을 보여준다.

병조에서 軍령에 관한 일에 대해 계문하다:

1. 평상시에 승을 내릴 때는 本曹에서 鎮撫所에 移文하고, 진무소에서 衛將에게 移文하게 하고, 만약 긴급한 일을 아뢰 때에는 舊例에 의거하여 牌를 발송하여 진무를 불러 대면하여 부탁하게 하소서.

1. 五衛에서 軍승을 범한 군사는 衛將이 바로 위에 아뢰게 하고, 本曹 및 진무소에서 摘奸할 때나 行巡할 때 禁승을 범한 군사도 또한 각기 바로 위에 아뢰게 하소서.

1. 궁성의 안팎을 巡緝하는 군사의 수효는 위장이 磨勘하여 본조에 보내어 시각을 나누고 길을 나누게 하고, 또 宮城 안팎의 여러 문을 把直하는 군사의 姓名을 기록하여 1건은 진무소에 보내고 1건은 본조에 보내면, 본조에서는 다시 이름을 써서 위에 아뢰게 하고, 궁성 밖의 군사는 위장이 고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1. 部將은 每部の 1인은 본조에서 注擬하여 點을 받아서 각기

43) 《世祖實錄》 世祖 3年 4月 甲午.

44) 崔承熙,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330쪽.

45) 민현구, 앞 책, 288쪽.

本部에서 直宿하도록 하고, 宣傳官 15원은 인원을 정하여 3番으로 나누어 3일마다 서로 교체하여 思政殿 문 안에서 직숙하게 하고, 선전할 때는 서서 전하고 마주보고 꿇어앉지 못하도록 하소서.

1. 鎭撫所의 진무 30명 내에 15명은 줄이고, 15인으로써 인원을 정하여 3번으로 나누어 경복궁 내소에 3인, 광화문 외소에 1인, 창덕궁에 1인이 직숙하고, 외소의 진무는 명령하는 바가 있으면 모름지기 宣傳標信을 받아야 하고, 본조의 낭관이 명령을 받들어 전할 때에도 또한 선전표신을 상고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⁴⁶⁾

위 기사를 보면 군령을 전달할 때에 병조와 오위진무소가 함께 군령을 출납하는 것이 아니라 병조가 우선 왕명을 받아 그 후에 진무소에 移文하고, 진무소에서 衛將에게 移文하게 되는 시스템이 확정되었다. 군사에 대한 감독권도 병조와 진무소가 함께 행사하고 있었다.

세조 12년(1466) 1월에 관제개혁으로 五衛鎭撫所가 五衛都摠府로 개칭되고 이리하여 조선 초기 軍令體系의 정비가 일단락되었다.⁴⁷⁾ 발병권을

46) 《世祖實錄》, 世祖 3年 4月 甲午. “兵曹啓: ‘一, 常時出令, 本曹移文鎭撫所, 鎭撫所移文衛將, 若啓緊急事, 依舊例發牌, 招鎭撫面囑. 一, 五衛犯令軍士, 衛將直啓, 本曹及鎭撫所摘奸及行巡時犯禁軍士, 亦各直啓. 一, 內外巡緝士之數, 衛將磨勘送本曹, 分更分道, 且錄內外諸門把直軍士姓名, 一件送鎭撫所, 一件送本曹, 本曹更書名以啓, 宮城外軍士, 衛將毋得考察... 一, 部將每部一人, 本曹注擬受點, 各其本部直宿, 宣傳官十五員定額, 分三番三日相遞, 思政殿門內直, 宣傳時立傳, 毋得對跪. 一, 鎭撫所鎭撫三十內減十五, 以十五人定額, 分爲三番, 景福宮內所三人、光化門外所一人、昌德宮一人直宿, 外所鎭撫有所令, 則須受宣傳標信, 本曹郎官承傳時, 亦考宣傳標信. 一, 諸衛無所巡察, 然警衆不弛, 兵家所貴, 或命大臣, 或命宗親, 或命兵曹、鎭撫所宣傳官, 宦官、司謁、司鑰, 至於政院皂隸, 若受宣傳標信而往, 則卒及五長以上, 不告將帥而奉命, 若大將傳命標信, 則令其衛將而已, 衛將傳令標信, 則令其部將而已, 部將不聽大將之令, 統將不受衛將之令, 皆從此例... 一, 舊例迎秋門節制使一員、鎭撫一員直宿, 今勿令直宿, 以宣傳標信開閉. 一, 建置大將, 則本曹定郎官二員、吹螺赤二人、太平簫二人, 形名各差備螺匠十人、令史二人, 給該用紙筆墨... 一, 五衛都鎭撫印、大將之印、義興衛將之印、龍驤衛將之印、虎賁衛將之印、忠佐衛將之印、忠武衛將之印、內禁衛將之印, 各鑄一顆以給...’ 從之.”

47)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144-153쪽, 285-286쪽.

지니는 오위도총부는 왕명 출납에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오위 병력에 대한 入直, 行巡을 監督하는 것이 실제 임무가 되었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병조는 왕과의 연결이 더 긴밀했던 반면에 도총부는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掌兵者와 더 가까운 위치에 처하고 있었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왕권강화책 속에 또 하나의 특징은 친군조직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다. 당시 內禁衛와 兼司僕은 진정한 친군으로 존재하고 있었다.⁴⁹⁾ 세조가 왕 5년(1459)에 왕의 측근에서 入直·宿衛를 담당하였던 內禁衛를 독립아문으로 승격시켰고 왕의 親兵 구실을 하게 하였다.⁵⁰⁾ 뿐만 아니라 兼司僕을 親軍 組織으로 본격화하였다.⁵¹⁾ 兼司僕은 태종 9년(1407)에 고려의 尙乘承旨를 계승한 내사복시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고, 주로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서였다. 세조 7년에 국왕이 검사복에서 장수를 배치하려는 의사를 표출했고⁵²⁾ 이어 검사복장 4명이 두었으며 또 동왕 10년(1464) 8월에 검사복 50명을 배치하게 하였다.⁵³⁾ 따라서 검사복이 정비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종2품 관서로 설정되어 내금위와 함께 친군의 쌍벽을 이루었다. 이에 조선 초기에 오위와 별도로 궁중에 직속하던 內禁衛와 兼司僕이 본격적으로 왕의 독립적 친군세력이 된 것이다. 두 관아는 왕명을 직접 받아 친군인 군사를 지휘·통솔하여 군령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다.

[표1]은 태조부터 세조까지의 복잡한 군령체계의 정비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나타난 조선 초기 군 통수권 변화의 지향점과 기구의 역할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조선건국 이후 왕조교체기에 분산되어 있던 군 통수권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의흥삼군부를 설치하고 중앙군에 대한 발명권과 발병권을 모두 재상에게 집중시켰다. 태종이 정국을 장악하자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치면서 재상이 가지고 있는

48) 민현구, 앞 책, 288쪽.

49) 《世祖實錄》 世祖 10年 8月 壬午. “且本朝軍士, 親兵曰內禁衛、兼司僕.”

50) 《世祖實錄》 世祖 5年 8月 甲子. “一, 內禁衛不隸五衛, 其節制使三人稱內禁衛將, 設衛門, 每番一將率入直.”

51) 南都泳, 1966, <尙乘局에 대하여 -鮮初의 內司僕寺·兼司僕 成立에 대한 一考->, 《東國史學》 9·10, 159쪽.

52) 《世祖實錄》 世祖 7年 6月 乙未. “上謂兵曹參判金國光曰: 凡軍士皆有主將統察諸事, 獨兼司僕無之, 今欲置將, 速與宰樞等議之.”

53) 《經國大典》 卷4 《兵典》.

막강한 군령권을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이 스스로 발명하는 자가 되었고 병조가 군령체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고 군사기구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병조의 軍權 집중문제는 다시 문제가 되었고 병조와 橫的 관계인 군사기구가 필요했다. 이리하여 삼군진무소가 설치되어 병조와 발병권을 공유하였다. 이는 문반과 무반을 구별하지 않는 고려적 관료체제에 변화가 가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앙군만 파악하던 삼군진무소가 발전하다가 세조대의 오위도총부로 개편되었고 결국 지방군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단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오위도총부가 왕명 출납에 병조보다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주로 군사를 감독하는 것을 실제 직책으로 담당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보아 文으로 하여금 武를 통제하는 상황이 군령체계에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왕이 다시 친군세력을 보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친군 세력이 왕명을 받아 바로 군령을 집행하고 있었다.

[표1] 朝鮮初期 軍令體系의 整備過程

시기	주체기구	군령작동	특징
태조 2년 ~	의흥삼군부	재상 -> 의흥삼군부 판사 -> 삼군(중앙군) 절제사	1. 최고군사기구 2. 재상=판사: ·판사를 겸임하는 재상이 軍·政權 파악. 3. 기구의 성격: ·재상의 명령 하달. ·집행 상황을 감독.
정종 2년 ~	의흥삼군부	도평의사사 -> 의흥삼군부 판사 -> 삼군 총제	판사인 재상이 독자적인 발명권을 가지지 않음.
태종 1년	승추부	재상 -> 승추부 판사	1. 삼군 총제 이하의

~		-> 삼군	장병자들이 별도의 체계를 갖게 됨. 2.최고 군사기구의 정치적 위상이 축소.
태종 5년 ~	병조	왕 -> 병조 -> 삼군	·宰相掌發命之權의 원칙이 폐지, 원칙적으로 재상이 군령출납에 소외됨. ·군정을 총괄한 병조가 군령 역할을 함께 담당해 최고 군사기구로 부상.
태종 9년 ~	병조·삼군진무소	왕 -> 병조·삼군진무소 -> 삼군	1. 병조의 軍權이 억제됨. 2. 평소에 병조와 진무소가 함께 왕명 출납.
태종 9년 ~	병조·의흥부	왕 -> 병조·의흥부 -> 삼군	3. 긴급한 군사 집결 상황 하에 의흥부가 더 우위를 차지. 4. 개편된 의흥부가 前처럼 독자적인 군령출납 기능을 가지지 않음.
태종 12	병조	왕 -> 병조 -> 삼군	

년 ~			병조가 다시 지나친 軍權을 가지게 됨.
태종 14년 ~	병조·삼군진무소	왕 -> 병조·삼군진무소 -> 삼군	군령상 진무소와 병조의 양립구조가 다시 나타남.
세종 즉위 ~	병조·삼군진무소	왕 -> 병조 -> 삼군진무소 -> 삼군	실제적인 군령출납에서 삼군진무소의 위상이 계속 떨어짐.
세조 3년 ~	병조·오위진무소	왕 -> 병조 -> 오위진무소 -> 오위(중앙군·지방군)	지방군까지 편입.
세조 12년 ~	병조·오위도총부	왕 -> 병조 -> 오위도총부 -> 오위	오위도총부의 성격: ·入直, 行巡을 감독하는 것이 실제 직책으로 됨.

제2절 明 初期 大都督府 및 五軍都督府를 중심으로 한 軍令體系

朱元璋의 군사집단은 元末 反元 勢力의 一支인 郭家軍이었다. 至正 12년(1352)에 定遠 郭子興이 군대를 소집하여 군사를 일으켰다.⁵⁴⁾ 至正 15년(1355)에 郭子興이 사망하였고 주원장이 副元帥로 임명되었다.⁵⁵⁾ 그 후

54) 《太祖高皇帝實錄》 卷1 壬辰歲 2月1日. “壬辰春二月 乙亥朔, 定遠人郭子興、孫德崖及俞某、魯某、潘某等起兵, 自稱元帥, 攻拔濠州, 據其城, 守之.”

에 주원장이 郭씨 세력을 제거하여 최고 지도자인 元帥로 부상했고⁵⁶⁾ 이에 따라 郭家軍이 朱家軍으로 변모하였다. 至正 16년(1356)에 朱元璋이 金陵(今 南京)을 점거하고 그를 근거지로 삼고 最高軍事機構인 江南行樞密院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주씨를 핵심으로 한 군사집단이 이루어졌다.⁵⁷⁾ 元을 몰아내고 새로운 漢族 왕조를 세우려는 주원장에게 軍事系統을 완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었다. 결국 至正 21년(1361년) 3월에 주원장이 樞密院을 大都督府로 개편하였으며 養子인 朱文正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였고 中外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다.⁵⁸⁾ 大都督府가 설치된 후에 주원장이 중서성의 군사권을 약화시키고 대도독부를 최고군사기구로 나아가도록 기구를 계속 발전시켰다. 3년 후인 至正 24년(1364)에 대도독을 1품관으로 정하였고 10월에 또한 중서성에 속하는 都鎮撫隸를 대도독부에 부속시켰고⁵⁹⁾ 이에 따라 중서성의 병권이 점점 도독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至正 25년(1365)에 대도독인 朱文正이 죄를 받았으며 대도독이라는 직이 虛設되었고 左·右 도독으로 하여금 기구 최고 보직자를 하였다.⁶⁰⁾ 또 吳元年(1367) 11월 大都督府의 관제를 재설정하여 左·右都督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大都督을 대체하게 하였다.⁶¹⁾ 洪武元年(1368)에 주원장이 南京에서 황제로 칭하고, 國號를 大明으로, 年號를 洪武로 정하였다.⁶²⁾ 建國이후 주원장이 바로 공신을 책봉하였는데, 李善長、徐達、常遇春、李文忠、馮勝과 鄧愈을 開國元勳으로 삼아 公侯로 책봉하였고 또 開國元勳를 비롯한 21명의 공신의 位次를 직접 정하였다.⁶³⁾ 공신이자 정치 주도자인 李文忠, 馮勝이 좌·우 도독으로 임명되었다. 이러

55) 《太祖高皇帝實錄》 卷3 乙未歲 4月21日. “上爲左副元帥.”

56) 《明史》 卷一 《太祖記一》.

57) 黃阿明, 2010, <明建國前朱元璋集團的軍事領導機構及其演變>, 《史林》 3, 67쪽.

58) 《太祖高皇帝實錄》 卷9 辛丑歲 3月26日. “改樞密院爲大都督府. 命樞密院同僉朱文正爲大都督, 節制中外諸軍事...”

59) 《太祖高皇帝實錄》 卷15 甲辰年 10月25日.

60) 王世貞(明), 1985, 《弇山堂別集》 卷53 “都督府左右都督同知僉事表”, 中華書局, 995쪽.

61) 《太祖高皇帝實錄》 卷27 吳元年 11月13日.

62) 張廷玉(清), 《明史》 卷1 《本紀第二》. “洪武元年春正月乙亥, 祀天地于南郊,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明, 建元洪武.”

63) 商傳, 2013, 《明太祖朱元璋(上)》, 浙江文藝出版社, 161-162쪽.

한 도독부는 軍國大事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며 명실상부한 나라의 최고 군사기구가 되었다.

대도독부시기에 군령출납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실록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1. 工部로 하여금 御寶의 사용을 청하는 金牌와 군사를 동원 때에 쓰는 走馬符牌를 제조하게 한다. 御寶의 사용을 청하기 위한 금패 두 개가 있으며 중서성과 대도독부가 각각 한 개를 보관하고 있다. 만약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이 생기면 중서성과 대도독부가 각자 관장하고 있는 金牌를 가지고 입궁하여 御寶의 사용을 청한다. 走馬符牌라는 것은 급하게 군사를 동원시키려고 할 때에 使者로 하여금 패용하게 하는 신표이다.⁶⁴⁾

2. 황제가 “예로부터 符와 寶를 천하 관문에게 제시하는 신표로 삼아 왔다, 엄하게 지키지 않으면 간사한 신하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金牌 두 개를 제조하여 중서성과 대도독부로 하여금 각각 한 개를 관장하게 했다. 군기에 대한 모든 문서는 대도독부 장관과 중서성 재상을 비롯한 장관들이 아니면 상주할 수가 없고 또 각자 제멋대로 상주할 수가 없다. 만약 급하게 군대를 동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중서성이 바로 대도독부의 장관과 대면하여 같이 상주하고, 그 후에 각자 가지고 있는 金牌를 통해 御寶의 사용을 청하라, 반대로 만약 대도독부에서 상주할 일이 있으면 같은 원칙으로 시행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간사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했다.⁶⁵⁾

64) 《太祖高皇帝實錄》 卷65 洪武 4年 5月4日. “命工部造用寶金牌及軍國調發走馬符牌，用寶爲小金牌二. 中書省、大都督府各藏其一，遇制書發兵，省府以牌入，而後內府出寶用之. 其走馬符牌，凡有軍國急務，遣使者佩之以行.”

65) 《太祖高皇帝實錄》 卷67 洪武 4年 8月1日. “上以古者符寶示大信於天下關防，弗嚴則姦偽由生，故命改製二牌，仍付中書省與大都督府，各收掌之. 凡軍機文書，非大都督府長官與中書丞相及在省長官，不許入奏，亦不許擅自奏請. 若有詔急令調軍，中書省即會大都督府官同入覆奏，然後各出所藏金牌入內，請寶出用，如大都督府先奉旨亦如之其，有不行約會者，以姦臣論.”

위 기사를 보면 전국 군사에 대한 통수는 대도독부에 있었지만 중대한 발병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도독부가 독자적인 군령출납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서성과 함께 나서야 했다. 황제가 명을 내려 중서성과 대도독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金牌를 합쳐서 군령을 하달했고 반대로 군기에 대해 상주하려면 중서성이든 대도독부이든 반드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군대를 동원할 것을 朝堂에서 청할 수가 있었다. 즉 대도독부는 군 통수 체제에서 최상위자로 처하고 있었지만 주원장의 권력 억제로 인해 발병 기능을 독점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군령출납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홍무 13년(1380) 元월에 주원장이 中書省과 천년 역사를 지니는 宰相制度를 폐지하고 六部를 승격시키는 동시에 군사권을 총괄해 왔던 대도독부를 분할해서 오군도독부로 개편하고⁶⁶⁾ 中·前·後·左·右軍 각 도독부로 하여금 친군과 上直衛 외에 다른 京·京外 각 都司·衛所를 분장하게 함으로써 ‘군사의 일을 맡고 각자의 都司만 통솔하게 하였다.’⁶⁷⁾ 이리하여 大都督府를 정점으로 한 衛所體制가 五軍都督府-都司、行都司-衛-千戶所-百戶所라는 선으로 바뀌었다.⁶⁸⁾ 이 개편에 따라 軍令上 도독부가 병부와 함께 發兵 직책을 담당하고 또 이 병부가 더 우위에 있게 되었다.

주원장 시기의 오군도독부가 발병 단계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황제한테 출병을 청하는 자는 오군도독부가 아니라 병부로 되었다.⁶⁹⁾ 또한 황제가 발하는 명은 병부가 먼저 받아 오군도독부로 移文하게 한다. 병부를 통해 받았던 군령을 다시 각 都司、衛所에 하달했다.⁷⁰⁾

66) 《太祖高皇帝實錄》 卷129 洪武 13年 正月11日.

67) 張廷玉(清), 《明史》 卷76 《職官制一》, “掌軍旅之事, 各領其都司.”

68) 方志遠, 1993, <明朝軍隊的編制與領導體制>, 《明史研究》 3, 35-36쪽.

69) 鄭曉(明), 《今言》, 卷一. “出師之日, 賜平賊、討賊、平虜、平胡、征夷、征虜等印, 或將軍、或副將軍、或大將軍, 隨時酌與, 必由兵部題請, 五府不得干預.”

70) 《太祖高皇帝實錄》 卷143 洪武 15年 閏2月4日. “甲申 命禮部定諸司文移式. 先是以六部轄各布政使司, 察院轄各按察司, 五軍都督府分轄各都司衛所, 惟金吾等十二衛指揮使司係親軍王府, 長史司及護衛俱無統屬, 文移未定其式. 至是, 禮部定議六部及親軍諸衛, 欲移文護衛, 皆由都督府行於本國境內都指揮使司轉達. 若五軍都督府及親軍并在京各衛欲移文長史司者, 皆由六部行於本國境內布政使司轉達其護衛及長史司, 回文亦如之, 其六部及京衛文移在外都指揮使司并直隸衛所, 由五軍都督府行之; 五軍都督府於各布政使司并直隸府州, 由六部行之; 其

즉 군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병조가 군령출납에서 황제와 더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반면에 오군도독부는 각 군대 실체와 더 가까웠다.

한편 移文過程을 다시 보면⁷¹⁾ 親軍이 오군도독부의 移文對象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오군도독부는 모든 京衛 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在京의 親軍이 따로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명나라의 친군 조직은 至正 16년(1356)에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帳前親軍都指揮使司에 통합되었다.⁷²⁾ 주원장이 吳王이 된 후에 百官을 설치하는 동시에 禁軍을 확충하였으며 이에 따라 武德、龍襄、豹韜、飛熊、威武、廣武、興武、英武、鷹揚、驃騎、神武、雄武、鳳翔、天策、振武、宣武、羽林 十七衛로 편성된 親軍指揮使司가 이루어지고 元帥府(후 대도독부)에⁷³⁾ 부속시켰다.⁷⁴⁾ 후에 十七衛가 점점 대도독부의 통수에서 빠져 나왔으며 洪武 13년에, 주원장이 재상제도를 폐지했을 때 十七衛 親軍을 金吾前、金吾後、羽林左、羽林右、府軍、府軍左、府軍右、府軍前、府軍後、虎賁左로 구성된 ‘洪武上十衛’로 개편했으며 이로써 친군조직이 본격적으로 도독부로부터 분리해 나왔다.⁷⁵⁾ 洪武 16년에 錦衣衛를 친군체통에 귀속시켰고 또 洪武 18년에 旗手衛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親軍인 홍무 ‘上十二衛’가 정비되었다. 그들은 특수부대로서 軍政上 병부의 관할을 받았고 軍令上 황제한테서 명을 직접 받아서 시위 등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즉 친군 각 위는 발병과 장병의 역할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었다.

오군도독부의 위상 하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홍무 26년(1393)에 洪武 四大案件之一인 總兵인 藍玉의 반역사건이 발생하였고 주원장이 이를 계기로 무신인 공신들을 대폭 숙청하였다. 이에 따라 기구의 장관들을 주로 무신이 맡던 오군도독부의 정치적 위상이 대폭 떨어졌다. 정치적 공포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원장이 부마와 죄를 받지 않았던 공후의 자손들로 하여금 도독부를 주관하게 하였다. 공신의 후예들은 군공이 아니

於按察司，皆由察院行之。”

71) 앞 기사.

72) 《太祖高皇帝實錄》 卷6 丙申歲 7月1日. “置帳前總制親兵都指揮使司以馮國用爲都指揮使.”

73) 張廷玉(清), 《明史》 卷66 《兵制一》. “初, 太祖建統軍元帥府, 統諸路武勇, 尋改大都督府.”

74) 《太祖高皇帝實錄》 卷14 甲辰年 3月6日.

75) 《太祖高皇帝實錄》 卷129 洪武 13年 1月12日.

라 신분으로 도독부의 직위를 얻었으므로 황권에 대한 의지가 공신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때문에 병권에 대한 황제의 독재적 통수권이 한층 더 높아졌다.

永樂帝가 '靖難'으로 황위를 얻은 후 도독부는 잠깐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靖難 4년 동안 공을 세웠던 무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락제가 도독부의 관직에 공신을 봉하였다. 그런데 영락 시기부터 군령 작동 시스템에서 오군도독부의 역할이 실제로 더 축소되었다.

먼저, 京軍에 대한 관리에 환관과 병부가 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京軍에 대한 오군도독부의 지휘·통솔권이 점점 사라졌다. 홍무시기의 경군은 총 48개 衛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모두 오군도독부로 파악되어 있으므로 당시 京營은 五軍營으로 부르기도 했다. 영락제가 북경으로 遷都한 후에 京衛를 총 72개로 확충했는데 원래 오군도독부가 관할하고 있던 京衛를 한 營으로 병합하고⁷⁶⁾ 三千營, 神機營을 증치하며 명나라 경성의 호위군이자 주로 전투력인 京軍三大營(五軍營, 三千營, 神機營)을 새로 만들어냈다. 영락제는 五軍營에서 提督宦官 2명, 三千營에서 提督宦官 2명, 神機營에서 宦官 1명을 임명하였으며⁷⁷⁾ 따라서 환관이 경군의 실제적인 지휘·통솔자가 되었다. 그리고 三大營은 오군도독부에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 三營 안에 위와 같이 提督이 최고 장관으로 되는 독자적인 운영체통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군도독부는 경군의 군령출납과 감독에서 소외되어 있었다.⁷⁸⁾ 한편, 영락시기부터 개편해 왔던 長陵衛、獻陵衛、景陵衛 등 皇陵의 수비를 오군도독부가 아니라 병부에 귀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宣德年間に 원래 趙王府에 있던 호위군은 京衛인 永清左衛、永清右衛、彭城衛로 승격되어 병부에 부속되었다.⁷⁹⁾

둘째, 京軍三大營외의 각 군대를 감독하는 권함도 환관에게 점차 넘어가게 되었다. 영락 8년(1410)에 영락제가 환관 王安, 王彦之, 三保, 脫脫 등을 파견하여 都督 譚靑의 소속 군영에 가서 군사를 감시하게 하였다. 이것이 환관으로 하여금 군사를 감시하게 하는 시작이었다.⁸⁰⁾ 지방 요충

76) 王劉波, 2016, <明代京營制度變遷考>, 《史料研究》, 146쪽.

77) 冷冬, 1992, <略論明代軍事制度之轉變>, 《汕頭大學學報人文科學版》 4, 25쪽.

78) 查繼佐, 《罪惟錄》 志20 《兵制》, “經常行薄書而已, 非特命不予營務.”

79) 張廷玉(清), 《明史》 卷66 《兵制二》.

지에도 환관을 파견하여 鎮守 官兵을 감시하도록 했다. 영락제가 즉위하면서 顧成、韓觀、何福 등으로 하여금 貴州、廣西、寧夏 등 변방을 진수하게 하는 동시에 능력이 있는 환관을 선정하여 동행하게 하였다.⁸¹⁾ 영락 8년에 馬靖을 파견하여 甘肅에 있는 진수 군사를 순시하게 하였다.⁸²⁾ 宣德 元年에 내관 譚順으로 하여금 淮安의 鎮守 總兵官을 협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각 叛亂이 발생했던 이 지역의 군사를 감시하라는 황제의 실질적인 목적에 따른 일이었다.⁸³⁾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결국 각 省 各 鎮에서 환관이 진수하고 있었던 상황은 상례가 되었다.⁸⁴⁾

셋째, 행정, 군사와 검찰기능을 가지고 있는 總督, 巡撫 등의 관직이 생기면서 地方에 있는 都司、衛所에 대한 군령출납에서 오군도독부의 역할이 많이 없어졌다. 地方에서 軍·政權을 총괄하는 總督, 巡撫의 설치에 따라 地方에 있는 都司·衛所의 사무는 도독부 대신 總督, 巡撫를 통해 황제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군의 지휘·통솔에서 도독부의 역할이 계속 약화되었다.⁸⁵⁾ 물론 지방 각 都司에 있는 군사에 대한 감독과 총지휘권은 중앙에 있는 오군도독부가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는데 巡撫、總督이 생기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군한테의 군령출납은 오군도독부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巡撫制度、總督制度가 형성되면서 완전히 유명무실화 하였다. 巡撫制度가 형성된 후에는 지방의 군사 임명, 군대 배정, 군량문제 등을 모두 巡撫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⁸⁶⁾

넷째, 영락시기부터 오군도독부에서 冗官문제가 대두하는 등 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계속 낮아졌고 기구 자체는 점차 훈신과 공신 후예를 우대하는 도구로 발전해갔다. 영락시기의 오군도독부에서는 공신의 數가 대

80) 冷冬, 1992, <略論明代軍事制度之轉變>, 《汕頭大學學報人文科學版》 4, 26쪽.

81) 夏燮(清), 《明通鑒》 卷14. “會遣顧成、韓觀、何福等出鎮貴州、廣西、寧夏諸邊, 別選宦官有謀略者與之偕行, 遂爲一代癘階之梗雲.”

82) 王士禎(明), 《弇山堂別集》, 卷90, 《中官考一》.

83) 《宣宗章皇帝實錄》 卷20 宣德元年 8月4日. “上以漢王叛, 遣指揮黃讓、內官譚順等往淮安, 同總兵官平江伯陳瑄鎮守. 勅瑄曰: 今命指揮黃讓、內官譚順、內使陳錦助爾鎮守淮安, 撫綏軍民, 或有寇盜竊發, 卽與軍衛有司, 同心戮力, 固守城池, 遣人馳奏, 自餘一切鉅細事務, 尤在審處, 毋得一毫擾及軍民.”

84) 張廷玉(清), 《明史》 卷74 《職官志三》. “凡各省各鎮無不有鎮守太監.”

85) 彭勇, 2007, <明代衛所制度流變論略>, 《民族史研究》, 149쪽.

86) 馮建勇, 2005, <明代巡撫制度及其作用>, 《湖南科技學院學報》 26, 228쪽.

폭 늘어났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영락제는 오군도독부의 관직에 무장을 임명했다. 南京에 入主하는 당월에 바로 공신인 丘福、朱能、鄭亨 등 18명 무장을 都督僉事로 임명했다.⁸⁷⁾ 그 후에 ‘정난의 변’의 공신을 책봉할 때에 수십 명의 무장을 공후로 책봉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도독부의 관직을 겸하게 하였다.⁸⁸⁾ 공신의 후예들이 계속 도독부의 수혜 대상이 되었으며 소수민족까지 도독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영락시기의 오군도독부에서 靖難에서 공을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 明으로 귀순한 將士도 있었고 회유 목적에서 책봉된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외척도 도독부 보직자로 선택되었다. 영락시기에는 오군도독부 관원의 성분이 훨씬 다양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하사로 도독부의 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계속 많아졌다. 영종대에 이르러 勳臣과 공신의 후예로 하여금 五軍都督府를 관장하게 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⁸⁹⁾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명나라의 군령체계의 변화 지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군사를 일으켰을 당시 주원장은 효율적인 군사 동원과 일원적인 군 통수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도독부를 설립했고 전국의 군사를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서성의 군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도독부를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그런데 군령출납에서 대도독부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중서성의 견제를 받아야 했다. 이후에 대도독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군령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도독부를 오군도독부로 개편하였다. 중서성이 없어지면서 병부가 도독부의 발병권을 억제하는 기구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군령출납에서 심지어 더 우위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황제가 발하는 명은 병부가 먼저 받아 오군도독부한테 移文하는 새로운 절차가 이루어졌다. 문신으로 하여금 무신을 통제하는 현상이 나라가 안정되는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락시기부터 환관의 부상과 巡撫·總督의 출현으로 오군도독부의 京軍과 地方衛所에 있는 군사에 대한 군령출납과 감독권이 점점 없어졌다.

87) 《太宗文皇帝實錄》 卷9下 洪武 35年 6月21日.

88) 曹循, 2010, <明代武職階官化論述>, 《史學集刊》, 109-110쪽.

89) 曹循, 2012, <論明代勳臣的培養與任用>, 《雲南社會科學》 3, 118쪽.

제3장 양국 軍令體系 變化의 지향점과 차이점

제1절 中央軍·地方軍의 통수

조선이든 명이든 군령체계를 정비할 때에 전국의 모든 군사를 통일시키려는 지향점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중앙군에 대한 개편을 먼저 시작하고 세조대부터 지방군을 오위진무소에 함께 포함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반면에 명나라는 최고 군사기구를 설립할 당시에 중앙군과 지방군을 함께 포함시켰다. 먼저 [표2]、[표3]으로 조선 세조 前·後의 중앙 군사기구가 관할하고 있었던 병사의 편성을 볼 것이다.

[표2] 朝鮮初期 義興三軍府 ~ 三軍鎮撫所의 소속 부대⁹⁰⁾

	十司 (太祖3년 ~ 太宗18년)	十二司 (太宗18년 ~ 世宗4년) (世宗27년 ~ 文宗1년)	五司 (文宗1년 ~ 世祖3년)
中軍	義興侍衛司 忠佐侍衛司 雄武侍衛司 神武侍衛司	義興侍衛司 忠佐侍衛司 雄武侍衛司 神武侍衛司	忠佐司 義興司 忠武司
左軍	龍驤侍衛司 龍騎侍衛司 龍武侍衛司	龍驤侍衛司 龍騎侍衛司 龍武侍衛司 龍奮侍衛司	龍驤司
右軍	虎賁侍衛司 虎翼侍衛司 虎勇侍衛司	虎賁侍衛司 虎翼侍衛司 虎勇侍衛司 虎牙侍衛司	虎賁司

90) 閔賢九, 1983, 앞 책, 109쪽, 140-150쪽.

[표3] 朝鮮初期 五衛都摠府의 소속 부대 (《經國大典》)

義興衛 (中衛) 甲士·補充隊	中部	京中部·開城部·京畿楊州·廣州·水原·長湍 鎭管軍士
	左部	江原道江陵·原州·襄陽 鎭管軍士
	右部	忠淸道 公州·洪州 鎭管軍士
	前部	忠州·淸州 鎭管軍士
	後部	黃海道 黃州·海州 鎭管軍士
龍驤衛 (左衛) 別侍衛·隊卒	中部	京東部·慶尙道 大邱 鎭管軍士
	左部	廣州 鎭管軍士
	右部	晋州 鎭管軍士
	前部	金海 鎭管軍士
	後部	尙州·安東 鎭管軍士
虎賁衛 (右衛) 族親衛·親軍衛·彭排	中部	京西部, 平安道 安州鎭管軍士
	左部	義州·龜城·朔州 鎭管軍士 昌城·昌州·方山·麟山 鎭管軍士
	右部	成川 鎭管軍士
	前部	寧邊·江界·碧潼鎭管軍士 碧團·高山里·渭原·理山·寧遠 鎭管軍士
	後部	平壤 鎭管軍士
忠佐衛 (前衛) 忠義衛·忠贊衛·破敵衛	中部	京南部·全羅道 全州 鎭管軍士
	左部	順天 鎭管軍士
	右部	羅州 鎭管軍士
	前部	長興·濟州 鎭管軍士
	後部	南原 鎭管軍士
忠武衛 (後衛) 忠順衛·正兵·壯勇衛	中部	京北部·永安道北青 鎭管軍士
	左部	甲山 鎭管軍士 三水·甲山 鎭管軍士
	右部	穩城·慶源·慶興 鎭管軍士 柔遠·美錢·訓戎 鎭管軍士
	前部	鏡城·富寧·會寧·鍾城 鎭管軍士, 高嶺·潼關 鎭管軍士
	後部	永興·安邊 鎭管軍士

[표2]는 중앙군만 포함하고 있었던 삼군 편제였다. [표3]은 세조 후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오위체제였다. 삼군편제였을 때 조선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각자의 지휘·통솔 체계를 따로 지니고 있었고 중

양 군사기구는 중앙군만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세조 3년에 이르러 중앙군과 지방군이 같은 군령체계에 편입되었으며 조선의 일원적인 군사조직이 성립되었다.

실제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급진개혁파들이 이미 중앙군과 지방군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왕조를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도전, 조준 등이 각도의 군사지휘권을 일원화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다.⁹¹⁾ 그러나 건국 당시까지 이러한 지방군에 대한 중앙의 통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태조대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사병혁파를 목적으로 도절제도사를 혁파하고 지방의 군사권까지 통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태종이 실권을 장악한 뒤 지방의 반발 때문에 곧 도절도사를 다시 두었다.⁹²⁾ 그런데 그 후에 북방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방군에 대한 중앙의 집적적인 통수가 더욱 시급해졌다. 세종 31년(1449) 명나라에서 ‘土木의變’, 즉 명나라 영종이 치밀한 작전 계획 없이 대병력을 거느리고 오이라트를 공격하려 나섰다가 도리어 포로로 잡힌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조선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⁹³⁾ 문종 즉위 직후 오래 존재하던 북방 변경문제가 더욱 시급해지고 국방력 강화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문종은 몸이 매우 약하여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였다. 결국 세조대에 이르러 전국의 군사를 통일적으로 편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쿠데타와 위압으로 집권 즉위한 세조가 스스로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군사력 집중이었다.⁹⁴⁾ 세조 1년(1455) 전국 모든 지역을 군사조직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계의 군익도체제를 전국으로 확장시켰다.⁹⁵⁾ 세조 3년(1457)에 중앙에 있는 5사와 지방에 있는 각 영진군과 익군을 병합하고 중앙군을 이루는 거의 모든 병종을 5위에 편입시켜 입직·숙위와 시위 및 수도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진관을 망라한 지방군사까지 위별로 분속되어 있었는데, 즉 중앙군과 지방군을 모두 五衛鎭撫所(세조 12년(1466) 후의 五衛都摠

91) 《高麗史節要》 辛禡 14年 8月, 10月; 恭讓王 元年 12月 趙浚上書.

92)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115쪽.

93) 朴元燾,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43-244쪽.

94) 최승희, 2002, 《조선 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71쪽, 305쪽.

95) 윤훈표, 2011, <조선전기 진법훈련 체제의 변화>, 《역사와 실학》 46, 28쪽.

府)에 들어가게 하였다. 또한 군익도체제를 진관체제로 바꾸고 주요 지역을 거진으로 해 나머지 주변 지역의 제진이 그 휘하에 소속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거진을 중심으로 제진이 이에 딸리도록 한 것은 일원적 군사체제를 더욱 분명히 했던 조치였다.⁹⁶⁾ 이리하여 원래 중앙군만 파악하던 五衛鎮撫所가 지방군까지 파악하게 되었다.

명의 상황은 주원장이 吳王이 된 후에 통일적인 무장역량을 건설하기 위해 원나라의 군제를 참고하여 衛所制度를 수립하였다. 人員數에 따라 指揮(오천 이상)、千戶(천 이상)、百戶(백 이상)、總小旗(오십 이상)로 구성된 군사적 편제를 정하였는데⁹⁷⁾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명나라의 창건 당시 수립한 그대로 이어져갔다. 요충지에 있는 각 郡에 衛所를 설치하였으며 五千六百人인 있는 곳은 衛로 하고 千一百二十人인 있는 곳을 千戶所로 하고 百十有二人인 있는 곳은 百戶所로 하였다.⁹⁸⁾ 또한 한 衛에 所 5개를 부속하게 하였다. 천하 모든 군사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大都督府·五軍都督府-都司-衛所-千戶-百戶’라는 衛所制度의 최상위자는 대도독부이자 후의 오군도독부였다. 즉 최고 군사기구인 대도독부의 설치에 따라 전국의 군사를 통제하게 되었고, 명이 건국하자 이 모든 군사가 京衛軍과 지방 각 衛所軍으로 구분되었다. 자연스럽게 도독부는 경군과 지방군을 모두 통수했다. 당시 오군도독부 시스템에서 포함하고 있었던 부대를 아래 [표4]로 정리하였다.

[표4] 洪武時期 五軍都督府-都司-衛所

	在京	在外
左軍都督府	留守左衛 鎮南衛 驍騎右衛	浙江都司 (杭州前衛 등) 遼寧都司 (定遼左衛 등) 山東都司 (鄧州衛 등)

96) 윤훈표, 2011, 앞 논문, 30쪽.

97) 《太祖高皇帝實錄》 卷14 甲辰年 4月29日. “其核諸將所部, 有兵五千者爲指揮, 滿千者爲千戶, 百人爲百戶, 五十人爲總旗.”

98) 張廷玉 (清), 《明史》 《兵制二》. “天下既定, 度地害要, 系一郡者設所, 連郡者設衛. 大率五千六百人爲衛, 千一百二十人爲千戶所, 百十有二爲百戶所. 所設總旗二, 小旗十, 大小聯比以成軍.”

	龍虎衛 瀋陽左衛 瀋陽右衛	
右軍都督府	虎賁右衛 留守右衛 武德衛	雲南都司 (雲南左衛 등) 貴州都司 (貴州衛 등) 四川都司 (成都左護衛 등) 陝西都司 (神武右衛 등) 廣西都司 (桂林右衛 등)
中軍都督府	留守中衛 神策衛 應天衛 和陽衛	直隸都司 (揚州衛 등) 中都留守司 (鳳陽衛 등) 河南都司 (河南衛 등)
前軍都督府	留守前衛 龍驤衛 豹韜衛	直隸都司 (九江衛) 湖廣都司 (武昌衛 등) 湖廣行都司 (荊州衛 등) 興都留守司 (承天衛 등) 福建都司 (福州中衛 등) 福建行都司 (建寧左衛 등) 江西都司 (南昌衛 등) 廣東都司 (廣州前衛 등)
後軍都督府	留守後衛 鷹揚衛 興武衛 大寧中衛 大寧前衛 會州衛 富峪衛 寬河衛 神武左衛 忠義右衛 忠義前衛 忠義后衛 義勇右衛 義勇前衛 義勇后衛 武成中衛 蔚州左衛	直隸都司 (蘇州衛 등) 大寧都司 (保定左衛 등) 萬全都司 (萬全左衛 등) 山西都司 (太原左衛 등) 山西行都司 (大同左衛 등)

조선의 지방군에 대한 지휘체계 정비과정이 명보다 오래 걸렸던 중요한 원인은 당시 제도적·사회적 문제 때문이었다.

우선 명은 원을 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군사를 시급히 전국적으로 통

솔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전국의 모든 군사를 통합했다. 또한 주원장이 전국의 군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급히 衛所制를 정비했고 軍戶를 만들었다. 그는 ‘以籍定役’(籍으로 役을 정한다)이라는 원칙으로 호적법을 새로 만들었으며 軍籍과 民籍을 구분하여 戶部로 하여금 민적을 장악하게 하였고 都督府로 하여금 軍籍을 관리하게 하였다. 각 都司衛所에서 관할 지역의 軍戶를 기록하고 있는 軍黃冊이 보관되어 있었다.⁹⁹⁾ 새로운 제도인 衛所制 하에 일원적인 군역체계와 질서가 있는 군호과약 방법이 정비되어 있다. 이는 지방군의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중앙군과 지방군을 한 번에 통수시켰다. 때문에 명초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함께 대도독부에 소속시키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일렀다.

한편 조선의 군사제도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시작하였다. 조선초기의 군역 부담자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 관리하고 있었으며, 즉 지방군은 각 지방별로 파악된 호적을 통해 군정이 파악되어 각 병종별로 군역이 부과되는 것이었다. 물론 지방군의 군적은 중앙에 별도로 배치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하지 않았다.¹⁰⁰⁾ 中央集權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말선초에는 군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중앙에 있는 군사는 권력중심과 가깝기 때문에 그들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지 않지만 멀리 있는 지방군에 대한 관리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군사제도하의 군역부담자는 명나라 것과 달리 지정된 군호가 없었고 모두 일반 양인농민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군적의 작성은 호적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했으므로 군사 파악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호적 등 여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있어야 군사파악이 명확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건국초기에 3년마다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호적이 작성되지 못하여 호구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조선적인 호적법은 세종대에 이르러야 정비되었으며 따라서 그때까지 군적도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籍에 오르지 않은 人丁(隱丁)이 매우 많았으며 軍役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건국 후 지방군을 파악하기 위한 軍籍을 거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태였다. 태조 2년(1393) 9월이 되어야 전국의 軍籍이 작성되어 중앙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99) 彭勇, 2007, <明代衛所制度流變論略>, 《民族史研究》, 154-155쪽.

100)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64-65쪽.

동북면과 서북면의 것은 누락되어 있었고 결국 태종 6년(1406)부터 그곳의 戶口 파악 작업이 차츰 진행하게 되었다.¹⁰¹⁾ 세종 22년(1440)까지는 중앙군으로 종사하는 軍丁과 그 奉足은 제외되고 시위군, 영진군, 수군 등의 군정과 봉족을 그 지방의 군역으로 파악하여 軍籍에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후에 갑사를 거주지의 영·진별로 軍籍에 이름을 올리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문종 원년(1451)에 한번 지방군을 모두 지방별로 거주지의 軍籍에 이름을 올리게 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⁰²⁾ 지방군에 대한 파악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결국 세조대에 이르러 중앙군과 지방군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취제도의 혼란으로 인한 재정문제 때문에 건국초기에는 새 집권자가 이렇게 복잡한 軍丁 파악 방법을 잘 다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조선 초기에 전국 군사를 제대로 파악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렸다. 元額의 부족으로 우선 나라의 심장인 수도와 그 최고 통치자인 왕의 안전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중앙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에 들어가서 稅制를 비롯한 여러 部面의 收取體制가 정비되었고 국가 재정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결국 세종 말부터 국가권력이 지방군까지 철저히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종 말까지는 중앙에서 집권자가 왕권확립을 위한 일에만 전념하였고 지방군의 관리에 거의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상으로 조선과 명이 군령체계의 정비과정 속에서 전국의 모든 군사를 통일시키려는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겪었던 과정은 달랐음을 살펴보았다. 명은 원을 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시급히 군사를 전국적으로 망라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전국의 모든 군사를 통합시켰다. 또한 衛所制 하에 軍籍을 다른 戶籍과 분리해서 따로 관리했던 것과 군호를 세습하게 했던 주원장의 조치는 지방군의 파악을 상대적으로 혼란이 없이 달성하였으며 따라서 전국의 군사를 신속히 통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명초에 중앙군과 지방군을 함께 대도독부에 소속시키는 과정이 상대적

101) 閔賢九, 1983, 앞 책, 138-140, 228, 231쪽.

102)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186쪽.

으로 빨랐다. 조선은 건국 후에 집권자들이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지방군과 중앙군을 일원화하려고 했지만 국초의 약한 중앙집권력, 호적법의 미비로 인한 혼란스러운 軍籍문제, 좋지 않은 재정상태 등으로 인해 조선적인 군사제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결국 오래 동안 중앙에서 지방군을 파악하지 못했다. 세종대에 이르러 국가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軍籍이 점차 만들어짐으로써 통일적으로 군사를 파악하는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국방력의 확장이 점차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결국 세조의 지방에 대한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으로 지방군이 중앙군과 함께 오위진무소에 편입되었다.

제2절 親軍의 단독 설립

親軍은 일종의 特殊兵으로 군주권의 강화에 큰 의미가 있었다. 왕과 황제는 그 권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겠지만 그것은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친군 세력을 키우는 것이 군주의 권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병을 가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군주가 직접 병력을 통제하는 것은 이미 엄청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친군조직의 하나의 특징은 군사 구성원은 간단한 군역부담자가 아니라 특별히 선정되고 녹봉을 받는 일종의 직업군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경우 내금위는 태종이 가장 신임한 者로 뽑았던 近侍兵이었다, 세종대에 이르면 내금위의 병사 선발이 엄격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내금위 군사는 武才卓異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계에 있는 鄉吏 乃至 土豪子弟이어야 할 지역 조건도 있었다.¹⁰³⁾ 그 후에 지역 조건이 점점 사라졌는데 내금위 군사는 늘 宿衛軍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병종이었으며 숙위 군사를 뽑을 때는 내금위에 불합격하면 별시위, 감사로 보내도록 했다.¹⁰⁴⁾ 이러한 내금위는 양계에 가서 赴防할 필요가 없었으며 친군 조직의 중추였다.¹⁰⁵⁾ 겸사복의 임용 절차는 처음에 永安·平安道の 절제사가 1차 시험

103) 차문섭, 1964, <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 《史學研究》 18, 109쪽.

104) 《成宗實錄》 成宗 2年 3月 丙子, “兵曹啓: ‘前此諸色軍士改取才時, 內禁衛不中格者, 移屬別侍衛; 別侍衛不中格者, 移屬甲士, 例也. 請今後內禁衛取才未準十矢者, 隨其矢數, 從願許屬別侍衛、甲士; 別侍衛取才未準六矢者, 準矢數, 許屬甲士.’ 從之.”

을 해서 유능자를 선정해 상신하면 병조·도총부·훈령원이 內禁衛試取例(木箭·鐵箭·騎射·騎槍으로써 試取)로 2차 시험을 실시해서 합격한 자를 검사복 군사로 임명하는 것이었다.¹⁰⁶⁾ 그 후에 取才 범위는 京軍士와 下三道로 넓혔지만 그 등용 조건은 여전히 엄격했다.

명의 경우는 일반 위소의 군사는 보통 세습인 군호자인데 친군위의 군사는 민간에서 뽑아왔던 壯士들이나 황제가 믿을 만한 자였다.¹⁰⁷⁾ 영락제가 증치한 친군위는 주로 친왕일 때의 자신의 호위군들이었으며 그는 심지어 어린 아이를 뽑아서 특별히 호위군인 府軍前衛를 조직화하기도 했다.¹⁰⁸⁾ 북경에 가서 군역을 받는 지방군인 班軍이 있었는데 그들은 京軍三大營으로 편입되었지만 친군조직에 들어가지는 않았다.¹⁰⁹⁾ 이는 친군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의미였다.

왕과 황제가 친군을 다른 군사와 다르게 보고 결국 그들을 다른 부대와 분리시키는 지향점은 유사하지만 왕조 정세에 따라 그 과정과 가지고 있는 병력은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鮮初에 親軍은 太祖代에 다른 중앙군과 같이 의흥삼군부가 통수하게 되었고 그 후인 태종·세종·문종·단종대에 독립적인 친군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世祖代에 그것이 다른 중앙군 조직과 분리되었다. 明은 애초부터 親軍을 다른 京衛 병사와 다르게 보아 오군도독부가 아니라 황제가 따로 통제하고 있었으며 친군에 대한 감독과 군령출납에서 도독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친군조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커지고 있었다. 북경을 기반으로 한 영락제가 남경의 취약한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고 반대세력을 막을 수 있도록 親軍 10개를 증치하여 ‘上二十二衛’라는 새로운 금군계통을 만들었다. 宣德연간에 四川、貴州、廣西 등 여러 군데에서 亂이 발생하여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親軍衛 4개를 더 增設하여¹¹⁰⁾ 이에 따라 명의 ‘上二十六衛’라는 親軍系統이 완전

105) 《世宗實錄》 太宗 22年 閏2月 癸未. “傳旨吏曹: 今後內禁衛及司僕寺官員, 勿差外任. 如不得已用於兩界, 則取旨施行.”

106) 《經國大典》 卷4 《兵典》

107) 孫承澤(明), 1984, 《天府廣記》. 北京古籍出版社, 412-413쪽.

108) 《太宗文皇帝實錄》 卷163 永樂 13年 4月10日. “設府軍前衛親軍指揮使司置官屬初, 上選幼軍隨侍.”

109) 張廷玉(清), 《明史》 卷66 《兵制二》. “班軍者衛所衛所之軍番上京師, 總爲三大營者也.”

110) 《宣宗章皇帝實錄》 卷130 宣德 8年 7月11日.

히 이루어졌다. 명나라의 친군 변화 상황을 [표5]로 정리하였다.

[표5] 明 親軍衛 構成

洪武 (18年) 上十二衛	永樂 上二十二衛	宣德~ 上二十六衛
<p>金吾前 金吾後 羽林左 羽林右 府軍 府軍左 府軍右 府軍前 府軍後 虎賁 錦衣 旗手衛</p>	<p>錦衣 旗手 金吾前 金吾後 羽林左 羽林右 府軍 府軍左 府軍右 府軍前 府軍後 虎賁 羽林前 金吾左 金吾右 燕山左 燕山右 燕山前 濟陽 濟州 大興左 通州衛</p>	<p>錦衣 旗手 金吾前 金吾後 羽林左 羽林右 府軍 府軍左 府軍右 府軍前 府軍後 虎賁 羽林前 金吾左 金吾右 燕山左 燕山右 燕山前 濟陽 濟州 大興左 通州衛 武驤左 武驤右 騰驤左 騰驤右衛</p>

조선이 명과 달리 오래시간을 걸려 독립적인 친군세력을 만들게 되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고려 말에 세력 양성 과정에서 이성계도 친군 세력을 키웠다. 都總中外諸軍事府가 바로 그것이고 그들은 이성계의 휘하 병사인 함경도 출신의 사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조선이 건국하면서 중앙군의 실세로 등장했다.¹¹¹⁾ 얼마 되지 않아 의흥삼군부의 성립으로 ‘親軍’ 세력은 삼군인 우군에 들어갔으며 다른 중앙군과 같이 일원적인 지휘체제에 의해 통수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당시 이성계는 정도전의 사병혁과 이념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親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世祖代에 변했다. 원래 왕의 측근에서 入直·宿衛를 담당하였던 內禁衛가 이때에 독립아문으로 승격되었고 또한 원래 말과 수레를 관리한 兼司僕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이들이 모두

111) 閔賢九, 1983, 앞 책, 101-103쪽.

왕의 親兵 구실을 하게 되었다.¹¹²⁾ 단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즉위한 세조가 당면한 시급한 정치과제는 왕권을 안정·강화하고 국왕중심의 정치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담당할 측근 관료집단과 왕권을 보호할 군사집단을 구축하였던 것이 그의 왕권 강화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내금위의 별도 설치와 겸사복의 친군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왕의 친군이 태종이나 세종대가 아니라 세조대에 따로 설치되는 것은 그 동안 삼군진무소가 파악하고 있었던 군사의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이유도 있다. 세종 말까지 중앙군은 금군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즉 태종과 세종은 당시 전체 중앙군을 왕을 호위하는 특별한 병종으로 보고 있었다. 친군을 따로 분리시킬 의미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세조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하여금 모두 오위진무소(세조 12년부터 오위도총부)에 부속시킨 후에 각 군사의 신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세종 말에 중앙군의 확장으로 그 기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모든 중앙군이 다 친군 구실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¹¹³⁾ 즉 원래는 모든 중앙군이 친군 구실을 하고 있었는데 세종말-세조대에 이르러 그렇지 않게 되었으며 명처럼 친군 구실을 확실히 하는 부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생겼다. 이리하여 왕권과 중앙집권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려는 세조가 내금위로 하여금 오위진무소(후 오위도총부)로부터 분리했고 겸사복을 친군으로 조직화하였다.

제3절 政治·軍事權 分離와 軍令權 分散

鮮初와 明의 군령체계 정비·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재상이 가지고 있던 政治·軍事權을 먼저 분리시키고 그 후에 군령권인 發命權·發兵權·掌兵權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조선에서는 發命權이 宰相에서 王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는데 명에서 皇帝가 애초부터 發命權을 신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조선에서 군사기구의 정비과정, 政治·軍事權의 分離와 軍令權 分散의 과정이 명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

112) 《世祖實錄》 卷17, 世祖 5년 8월 甲子. “一, 內禁衛不隸五衛, 其節制使三人稱內禁衛將, 設衙門, 每番一將率入直.”

113) 민현구, 1983, 앞 책, 139쪽, 137-149쪽.

잡하였다.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鮮初의 오위도총부는 6대 왕을 거쳐 마침내 정비되었던 반면에 오군도독부의 설치에 주원장 1인의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 초기의 政治·軍事權의 分離는 태조대에 실시하지 않다가 태종대에야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그 소요 시간이 명보다 길며 軍令權 分散의 과정도 명 초기보다 매우 번거로운 것이었다. 셋째, 군령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병조와 삼군진무소(오위도총부)의 양립구조가 나타났는데 명에서는 병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宦官 집단의 존재도 뚜렷했다.

조선과 명의 군령체계 정비의 이 지향점이 비슷했지만 각각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朝鮮과 明의 開國方式과 君主의 國政運營 理念 및 方式이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의 개국은 대규모 군사동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추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건국 과정에서 이성계 개인의 능력도 중요했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정치세력의 집단적인 역할도 매우 강했다. 이러한 집단적인 색깔이 강한 건국 당시에 왕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신하에 다소 의지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 건국 당초에 소수 재신의 정치참여가 상당히 뚜렷했다. 한편 麗末鮮初 이성계 일파가 高麗의 신하였고 대부분의 중요한 인원들은 모두 재신 기구인 도평의 사사의 관원이었다. 그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집결한 후에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삼군도총제부를 중심으로 한 군제개혁에서 왕이 아니라 재상의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재상의 통수권을 확보하는 원칙은 이성계의 재상을 중심으로 한 집권 패러다임과 깊은 연관이 있어 조선건국 후에 일종의 정치운영이념으로 되었으며 태조대에 변함이 없이 이어졌다. 고려 말에 같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파들이 집결될 수가 있었다. 고려말 신흥사대부들은 재상 중심 체제에 동의하여, 군주는 절대적인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상징성만 지닐 뿐 재상이 실질적인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⁴⁾ 이성계도 그중 한 명이고 개국 후에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면서도 정치에 재상의 존재도 함께 강조하고 있었다.

114) 류주희, 1999, <王子亂 朝鮮 開國功臣>, 《朝鮮時代史學報》 11, 9-10쪽.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교서를 짓게 하였으니,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陽氣가 한창인 이달에 이러한 비바람의 재변이 있어 변고가 보통이 아니니, 내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사람의 하는 일이 옳고 그름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상서를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옛날 슬기로운 임금들은 천재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사람의 일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혹은 몸을 기울여서 道를 닦기도 하고, 혹은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구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과인이 天職을 대신해서 天物을 다스리고 있으나, 나 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宰相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것이니, 時政의 得失과 生民의 休戚을 숨김 없이 말하여, 遷善改過해서 천변이 없어지게 하라.”¹¹⁵⁾

위 기사를 보면 태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재상의 존재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태조가 스스로 왕으로서의 독재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상이 정치에서 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또한 그는 鄭道傳·趙浚을 重用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수 재신을 정국주도자로 만들었다. 다음 사건으로 살펴보겠다.

殿中卿 卞仲良을 순군옥에 가두고, 대사헌 朴經과 순군 만호 李稷등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당초에 중량이 병조 정랑 李薈와 말하였다. “예로부터 政權과 兵權을 한 사람이 겸임을 못하는 법이라, 병권은 종친에게 있어야 하고 정권은 재상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준·정도전·남은 등이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니 실로

115) 《太祖實錄》 太祖 4年 4月 丁亥. “丁亥/命判三司事鄭道傳, 製教書曰: 時當正陽之月, 有此陰沴之災, 變故非常, 予甚懼焉. 且人事有得失之異, 天之災祥, 各以類應, 故古先哲王, 每遇天災, 必求人事, 或側身修道, 或博採群言, 蓋反其本也. 寡躬代天職治天物, 然不能獨治, 乃與宰相共之. 其時政得失、生民休戚, 陳之無隱, 庶幾遷善改過, 以消天變焉.”

좋지 못하다.”

〈그 후〉 중량이 또 이 말을 義安伯 李和에게 말했다. 화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중량을 불러서 물은즉, 중량이 사실대로 대답하고 또 말하였다. “朴苞도 또한 전하께서 국정을 잘못하여 여러 번 별의 변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성이 나서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나의 수족과 같은 신하들로 끝끝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의심한다면 믿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즉시 중량과 포와 회를 국문하게 하니, 포와 회가 중량과 더불어 서로 따지면서 자기만 모면하려고 하였다.¹¹⁶⁾

위 기사를 보면 殿中卿 卞仲良은 趙浚、鄭道傳、南閔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朴苞도 이성계에게 이러한 국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태조가 卞仲良、朴苞를 처벌하였다. 여기에는 趙浚、鄭道傳、南閔에 대한 태조의 절대적인 신임이 표출되어 있다. 즉 이러한 국정운영 방식은 태조의 선택이고 그는 의도적으로 政·軍의 重任을 三功臣에게 위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는 결코 개국공신이나 도평의사사의 정치권력에 눌러 虛器(실권이 없는 왕)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강력한 왕권으로 정치를 주도해갔지만¹¹⁷⁾ 재상중심이라는 정국을 운영하게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조대의 군령체계를 정비할 때 나타나던 정치·군사권을 분리하지 않은 현상은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성계와 정국 운영이념이 정반대인 이방원은 정권을 장악하자

116) 《太祖實錄》 太祖 3年 11月 庚子. “初仲良與兵曹正郎李薈曰: ‘自古政權兵權, 不可兼任一人. 兵權宜在宗室, 政權宜在宰輔. 今趙浚、鄭道傳、南閔等, 既掌兵權, 又掌政權, 實爲不可.’ 仲良以此言於義安伯 和, 和告于上. 上召仲良問之, 仲良對以實, 且曰: ‘朴苞亦謂殿下失爲國之體, 屢致星變.’ 上怒曰: ‘此數人, 皆我股肱之臣, 終始一心 者也. 如或可疑, 則誰可信者! 爲此言者, 必有以也.’ 卽命鞫仲良及苞、薈. 苞、薈與仲良相詰, 謀欲自免.”

117) 崔承熙,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51쪽.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고자 했다. 재상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치고자 한 태종은 軍權의 專掌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이 문제는 태종이 經筵에서 명백히 밝힌 적이 있었다.

經筵廳에 나아가 임금이 左右에게 이르기를,

“지금 鎭撫所를 설치한 것은 대개 예전에 兵權이 한곳에 속하지 않은 뜻을 본받고자 한 것이다. 太祖 때에 三軍府가 중앙 兵事를 專掌하였으나, 여러 道의 軍兵이 進退하는 것은 政府의 號令을 따랐기 때문에 權勢가 兩立되었으므로, 이를 고쳐 承樞府로 만들었었다. 근래에 軍務가 兵曹에 완전히 속하여 그 법이 조금 가벼워졌으나, 지금은 三軍의 動作을 먼저 領三軍事에 고하고 다음에 三軍摠制에게 고하니, 이것은 한 군데에 치우쳐 속하지 않은 뜻이다.” 하였다. 118)

태종의 말에 따르면 그는 兵權을 한 기구한테 집중시킬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태종은 신하한테의 권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선의 권력을 최대한에 왕에 집중시키기 위해 재상이 가지고 있던 정치권과 군사권의 분리를 먼저 착수한 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권력 균형을 위한 軍令權의 분리를 모색하고 있었다. 결국 삼군진무소의 설치는 당시 병조로 하여금 의흥삼군부처럼 병사를 전장하는 기구로 부상하지 못하게 한 조치였다.

그러나 태종의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 마침내 병조가 삼군진무소보다 軍令體系上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체제의 흐름과 병행하여 주로 문관이 기구의 당상관을 차지하고 있는 관서가 마침내 정국을 주도하게 될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집권자의 왕권 강화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평소에 군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병조에 移命의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군을 직접 거느리는 자로 하여금 군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태종의 의도를 보여준다. 119)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기구로 하여금

118) 《太宗實錄》 太宗 9年 8月 丁卯. “御經筵廳. 上謂左右曰: ‘今設鎭撫所, 蓋欲法古者兵權不偏屬之意也. 太祖之時, 三軍府專掌兵事, 然諸道軍兵進退, 則從政府號令, 權勢兩立, 革爲承樞, 近來軍務, 全屬兵曹, 其法稍輕. 今則三軍動作, 先告領三軍, 次告三軍摠制, 此不偏屬之意也.’ ”

상호 견제하게 하고 있었다.

병조의 우위 현상이 세종-세조대에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단종을 퇴위시키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위를 얻었던 세조가 스스로의 왕권을 강화하고 의정부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 무단으로 육조직계제를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병조의 권위가 훨씬 더 강화되어 그 우위가 완전히 확고해졌다.

조선 초기에 군령권의 배분으로 인해 나타났던 복잡한 양상은 당시 태조의 재상중심 정치운영이념과 태종의 왕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념 그리고 쿠데타로 즉위된 세조의 왕권 강화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체제하에 기구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었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명의 경우는 朱元璋이 元을討伐하는 朱家軍의 元帥로서 당연히 군령상의 최고권인 發命權을 가지고 있었다. 元末明初의 전쟁에서 주원장이 군사적 재능을 표출하고 원수를 담당하게 되어 그가 모든 군의 절대적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군대는 上下關係가 매우 엄격한 곳이고 전쟁으로 권력을 잡은 주원장이 집단 속에 지도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 군령체계 정비에서 주원장이 독자적이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朱元璋이 명나라를 창건한 이후 공신이나 신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신하는 신하로서의 직분을 잘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었다.

첫째, 그는 臣權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元의 멸망문제를 검토하였을 때에 그는 ‘主荒臣專’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주원장이 신하에게 ‘건국초기에 반드시 紀綱을 세워야 한다. 元氏의 昏亂은 紀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主가 荒하고 臣이 정사에 專하니 威福이 下移하게 되었기 때문에 法도가 행하지 못하고 人心이 渙散하여 天下가 혼란해졌다.’라고 하였다.¹²⁰⁾ 또한 洪武 11년(1378) 3월

119) 《世宗實錄》 世宗 15年 2月 丁未. “‘鎮撫所, 皆以他官兼之, 正與義禁府相同. 若詳定衙門高下, 則當爲三品衙門矣. 又移文格例, 未曾詳定, 今與兵曹關文相通, 實爲無據. 高麗軍簿, 每於上大護軍直宿時, 郎廳一員於片紙着署分定, 以相維制, 豈無深意! 且鎮撫所, 移文於各司, 則亦將移文於各道矣. 歲久法弛, 則發兵斂兵之文, 亦皆行移, 誰能禁止? 是則握兵之官, 又得發兵之權, 後世必將難馭矣. 此太宗雖置鎮撫所, 不給印信, 不令移文之聖慮也. 乞依舊除移文各司, 若有不得已之事, 呈手本於兵曹.’從之.”

120) 《太祖高皇帝實錄》 卷14 甲辰年 1月3日. “上退朝謂左相國徐達等曰 卿等爲生

10일에 ‘胡元之世 政專中書’라고 하여 신권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¹²¹⁾ 그래서 주원장이 紀綱을 세우는 것을 治의 本으로 간주하고 있었다.¹²²⁾ 원나라의 권신 문제를 심하게 여기고 있는 주원장이 조선 태조처럼 재상에게 막강한 권력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즉 주원장이 大都督府-五軍都督府라는 군사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둘째, 주원장의 국정운영 이념은 ‘尊卑有序 皇權至尊’(예도에 尊卑의分別이 있으니 君臣의 차별이 있다. 신하는 질서를 잘 지키고 황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식해야 한다.)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신하의 직책을 명확하게 지적했고 만약 신하가 스스로의 분수를 알지 못하면 비명에 횡사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친히 編纂하는 『御製資世通訓·臣用章』에서 그의 이러한 이념을 살펴볼 수 있다.

“어진 자가 아니면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충성한 자가 아니면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보답을 할 줄 모르는 자가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공적인 이름을 빌어 사복을 채우는 자가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복하는 자가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효자가 아니면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친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모욕, 기만, 사기, 방자를 자주 하는 자가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허세를 자주 부리고 잘한 척하는 자가 천수를 다하지 못한다,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비명에 횡사를 당할 것인데 모두 다 범하면 어찌 될 것인가?

... 충성을 다하는 자가 신하가 될 수 있고 그는 마땅히 군주를 잘 섬겨야 한다. 기만하지 말고 오만을 부리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 보답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군주의 은혜를 입기

民計推戴予 然建國之初 當先正紀綱 元氏昏亂 紀綱不立 主荒臣專 威福下移 由是法度不行 人心渙散 遂致天下騷亂.”

121) 《太祖高皇帝實錄》 卷117 洪武 11年 3月10日. “上謂禮部臣曰...胡元之世 政專中書 凡事必先關報 然後奏聞 其君又多昏蔽 是致民情不通 尋至大亂 深可爲戒.”

122) 《太祖高皇帝實錄》 卷26 吳元年 10月12日. “上謂臺憲官劉基 章溢 周禎 周禎等曰 紀綱法度 爲治之本.”

때문에 군주에게 잘 보답해야 한다... 둘째, 부모에게 잘 보답해야 한다. 셋째, 백성에게 잘 보답해야 한다. 이 도리를 위반하고 공적인 이름을 빌어 사복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복하거나 효도를 다하지 않거나 친척과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군주를 기만하거나 민을 학대하거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동우를 멸시하면 비명에 횡사를 당할 것이다. 신하는 관직을 받아 밖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군주가 신하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한 지역의 일을 관리하게 하는데 이 신하는 당연히 자신의 직분을 잘 지켜야 하고 군주에게 상주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역대의 신하들이 천재를 당하고 화를 입는 것은 그들이 민을 교화하거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태만히 하기 때문이었다. 개략 군주가 신하한테 일을 맡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지방의 정치를 번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신하들이 제사의 일을 잘 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누리기만 하며 군주를 기만하고 해야 할 일을 잊고 민을 고통에 처하게 만들면 사람과 하늘이 모두 분노할 것이다. 이에 그는 당연히 죽음에 당할 것이다.”¹²³⁾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주원장의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원장은 신하가 군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답을 잘 해야 하고 만약 신하의 행동이 자신의 통치에 해롭게 되면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시각에는 황제와 신하 사이에 절대적인 거리가 있다. 그는

123) 《御製資世通訓·臣用章》.“非仁人者不終，非忠者不終，非知三報壹祀者不終，假公營私者不終，代報者不終，非孝者不終，非親親者不終，又侮、瞞、欺、誑者不終，虛、詐而自高者不終，於斯十七事有壹者而不得其死，而況於備之者乎？...忠，爲人臣，當竭己以奉君，勿欺勿瞞勿侮。三報，壹曰爲蒙君恩而當思補報...二曰奉父母篤...三曰報民...否此道而公挾私仇，公挾私仇，因公爲己，代人報怨，不孝於祖不睦於親，欺誑侮瞞於君上者，虐民而詐取其所有者，自以爲尊能而藐視群友者，此數事有壹爲者不得其死...臣受職於外，所在或方或隅，君托以壹方，其方隅之事，凡當爲之事，無有不可不舉者，歷代之臣所以受天災人禍者，忘於教民祀神也，蓋君托於彼，務欲政令興，鬼神祀，況鬼神賴於此，必待祀事備。何其止知樂其身而充其腹，忘其所祀，民苦無憂，是致人神共怒，因有不得其死。”

백관이 군주에 잘 봉사해야 하고 신하로서의 직분을 잘 지키지 않고 군주를 기만하면 바로 사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황제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주원장의 國政運營 방식은 독재적인 황권을 확보하고 황제를 정점으로 펼치는 것이었다. 때문에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군령권을 중서성에 부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됨에 따라 과도한 군권을 대도독부, 오군도독부에 집중시키지 않을 것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政治·軍事權의 分離와 軍令權 分散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원장의 황권강화는 피비린내 나는 공포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¹²⁴⁾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주원장이 군사동원을 통해 황제 자리를 차지한 후 여러 가지 정체가 불분명한 반역 사건을 빌미로 공신 특히 무장을 멋대로 처형하는 등 무력 수단을 통해 신권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스스로의 황권을 강화시켰다. 주원장은 최소한의 힘을 투입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명나라 군사기구의 정비과정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영락시기부터 군령권의 배분이 전통적인 관료체계에 머물지 않기 시작하였다. 환관집단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군령권 실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군령체계가 새로운 단계로 변화해 갔다, 환관의 政事·軍事 介入이 명나라의 독특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명의 황제들은 그들의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환관을 의도적으로 배양하였다. 특히 중앙정치권력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초기 황제들이 가까운 內侍를 이용하여 정국을 엄하게 감시하고 皇權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환관들이 皇權에 부속해 정치에 관여하고 상당히 큰 세력으로 성장되었다. 宦官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은 중국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명나라 건국 이후 주원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환관집단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도 주원장 본인이었다. 至正 24년(1364)郭景祥이 大都督府의 參軍으로서 和陽을 주둔하다가 洪武 2년(1369) 8월에 浙江省 行省參政으로 임명되었던 것은¹²⁵⁾ 주원장이 환관을 기용하는 중요한 사례였다. 外臣에 대한 의심이 심한 황제로 알려졌던 주원장이 홍무 18년

124) 王世宜, 2006, <朱元璋‘重典治國’思想探析>, 《歷史學研究》 6, 91쪽.

125) 《(萬曆) 河州志》 卷3 《名宦列傳》, 台北成文出版社, 中國方志叢書 641. 《太祖高皇帝實錄》 卷37 洪武元年 12月1日.

(1385)부터 친히 刑典인 《大誥》를 편집하며 외신에 대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였는데 外廷에서의 격한 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주원장은 내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¹²⁶⁾ 그러나 환관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주원정이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국에서 환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었다.¹²⁷⁾ 환관집단이 주로 성장하였던 때는 영락시기로, 영락제가 靖難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환관의 도움이었다. 靖難의 많은 환관들이 건문제를 배신하여 朱棣에게 궁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덕분에 남경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朱棣가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狗兒 등 朱棣에 충성을 다해 혁혁한 공을 세운 용맹한 환관 장수들이 그의 군대에 포진하고 있었던 것도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환관의 중요성과 그들의 충심을 깨달은 朱棣는 즉위한 이후 그들에게 상당한 신임을 주었고 이에 따라 환관집단이 대폭 발전해갔다.¹²⁸⁾ 쿠데타로 황위를 얻었던 영락제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東廠과 錦衣衛 등 황제 개인에게만 책임지는 특무기구를 만들어서 朝廷을 엄격히 감시하였다. 그랬던 그가 鄭和로 하여금 병사 2만 7천명을 지휘하고 西洋 諸國로 나가게 하였던¹²⁹⁾ 것은 환관이 방대한 군사를 통수하도록 했던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영락제가 그랬던 것처럼 환관을 중용하는 행위는 결국 명나라의 정치적 특징이 되었다. 황제들이 환관을 양성함으로써 그들이 점차 기본적인 정치참여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환관의 知識人化’¹³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홍무제와 영락제의 강력한 황권 아래 환관들이 권신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왕조의 발전 속에 환관 집단이 급격하게 커져 결국 문관에 대항하는 정치집단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환관 二十四衙門의 일환인 司禮監은 宰相의 名이 없지만 宰相의 實을 가지게 되었으며¹³¹⁾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환관이 정국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면서 관료체제 속의 오군도독부의 권력을 침식하였고

126) 胡丹, 2008, <洪武朝內府官制之變與明初的宦權>, 《史學月刊》 5, 43쪽.

127) 張廷玉 (清), 《明史》 卷304 《宦官一》. “嘗鑄鐵牌置宮門曰：內臣不得干預政事，預者斬.”

128) 晁中辰, 2008, 《明成祖傳》, 人民出版社, 273쪽.

129) 王世貞 (明), 1985, 《弇山堂別集》 卷90 《中官考一》, 北京, 中華書局, 1727쪽.

130) 方志遠, 1989, <論明代宦官的知識化問題>, 《江西師範大學學報》 3.

131) 黃宗羲 (清), 1986, 《明夷待訪錄》 《置相》, 台北：新文豐出版公司, 355쪽.

이에 오군도독부 군령상의 위상이 대폭 격하되었다.

한편 조선에서 건국과 왕의 권력을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환관의 역할이 거의 없었으며 나라의 정치세력 구성에 환관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선, 왕이 정치를 펼칠 때에 애초부터 환관을 기용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계속 억제하고 있었다. 고려왕조가 흔들린 원인 중의 하나는 附元 세력이었던 환관의 정치개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신흥사대부들이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 속에 환관의 모습을 차단하려고 했다.¹³²⁾ 그들은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창건하여 중국 秦、漢、唐의 상황을 열거하여 환관문제를 거론하였다.¹³³⁾ 태종대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환관들을 조관의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세종대에 이르러 왕이 신하들의 강력한 환관억제 논의에 찬성하면서 왕명출납에서 환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성종대에 환관과 조사를 확연히 구분하게 되면서 환관의 임무가 내시부로 국한되어 그의 역할이 정형화되었다.¹³⁴⁾ 즉 조선에서는 환관의 권력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 초기 왕은 환관이 아니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신의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고 親王勢力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최상위 권력구조는 왕 혼자보다 왕을 비롯한 정치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태조는 조준·정도전·남음 등 적은 수의 재신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쳤으며 태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과 2,3명의 재신이라고 밝힌 적이 있듯이 하윤 등을 중용했다.¹³⁵⁾ 이러한 소수 공신의 정국 파악 상황이 세조대에 이르러 신숙주, 한명회를 대표로 한 권신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조는 宗親·功臣宰樞에 대한 친화책을 실시했으며 의정부·육조·승정원 및 공신, 종친 등 중추적 기관에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이들의 정치권력을 분산 안배하여 왕권을 집중하고

132) 張熙興, 2003, <朝鮮初期 宦官制의 整備와 運營>, 《慶州史學》 22, 138쪽.

133) 《太宗實錄》 太宗 1年 7月 己亥. “八曰斥宦官. 宦官之爲患尙矣. 秦之趙高、漢之恭·顯、唐之輔國·士良, 尤其甚者也. 且前朝之季, 宦者用事者, 非一二也. 蓋其爲人, 性識儂利, 語言辨給, 善伺候顏色, 逢迎志趣. 是以人主, 往往墮其術中而莫之悟, 以至移權柄生禍亂者, 接迹于世, 良可歎已. 願自今擇其醇謹之人, 復古制守門掃除之役, 不任以事; 其老奸巨猾、貪污無恥者, 盡令放歸田里, 毋使累惟新之化.”

134) 張熙興, 2003, <朝鮮初期 宦官制의 整備와 運營>, 《慶州史學》 22, 164쪽.

135) 《太宗實錄》 太宗 13年 8月 丁未. “上曰: 圖國者, 予與二三大臣耳.”

강화하는 효과를 얻었다.¹³⁶⁾ 국정운영에서 조선의 왕과 명의 황제가 서로 다른 대상을 선정하여 나라의 권력구조를 상이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환관이 조선의 정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과 명나라 초기의 군사기구와 군령체계 정비과정에서 왕·황제가 재상의 정치·군사권을 먼저 분리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 軍 令權을 分散하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향성은 역사적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명나라에서 환관집단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신의 군 통수권을 확보할 때 조선의 왕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료체제를 이용하여 기구와 기구로 하여금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명의 황제는 그에 의거한 宦官 집단을 중용하고 백관을 국가권력에서 소외시키고 있었다.

제4절 王權과 皇權 강화의 차이

이제 군령권의 배분양상 속에 나타났던 조선과 명 각자의 정치상과 군주권 강화의 차이를 살펴보자. 명은 영락시기부터 군령권을 배분할 때에 법적인 참정권이 있는 관료만 이용하지는 않게 시작되었고 조선은 여전히 재상, 병조, 삼군진무소, 오위도총부 등 전통적인 관료체제 속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더 넓게 보면 명나라의 권력구조는 조선의 국가권력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황제와 법적인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관 사이에 또 다른 권력기구가 있었다. 환관집단이 바로 이러한 권력구성원이었고 그들은 황제를 輔助하고 皇權에 의지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軍令(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권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황권에 부속해 있었던 것이므로 황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황권에 부속되어 있는 환관집단이 황제 본인을 대신해 전국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편 재상제도가 폐지된 후 명나라의 권력구조 속에 황권 외에는 또 다른 하나의 권력중심이 없었으며¹³⁷⁾ 각 政府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이상 전통적인 ‘宰相權’ (여기에 宰相權은 한 사람의 권력으로 정의하지 않고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정치세력으로 함)이 아니라 ‘황권’

136) 崔承熙,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353쪽.

137) 李渡, 2004, 《明代皇權政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27쪽.

으로 바뀌었다. 이는 독재적인 황권을 확보하기에 매우 유용하였는데 황제에게도 상당한 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독재적인 황권을 계속 보유하는 동시에 효율성이 있는 통치까지 이루려면 황제가 엄청난 정력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황제가 환관을 선택하여 立法·行政·軍事·司法·監察 등 나라의 모든 권력을 직접 본인에게 집중시켰다.¹³⁸⁾ 이러한 집권 방식은 오군도독부의 변화 속에 잘 드러나고 있었다. 영락제가 스스로의 권력을 이용하여 宦官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군을 감시하게 하는 것과 도독직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가 다른 관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로써 군 통수에 있어 황제의 독재적인 권력이 더욱 잘 확보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명의 황제는 모든 권력을 스스로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황권을 강화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재상, 병조, 오위도총부 등은 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왕권에 부속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조선의 왕들이 전통적인 관료체제를 이용하여 기구들(병조, 삼군진무소, 오위도총부 등)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 하고 이 기구들의 군령권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동아시아 군주체제하의 왕권과 황권은 모두 天이 부여한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의미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왕이 왕권을 이용하여 펼치는 정치와 명 황제가 황권을 이용하여 펼치는 정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군령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분석으로 보면 鮮初와 明初 집권자들이 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軍令體系를 정비·변화시켰다. 당시에 조선과 명은 그 환경이나 상황이 달랐지만 결국 같은 지향점을 보였던 것은 군사력이라는 것이 정치와 긴밀하다는 보편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향성이 비슷해도 개국 방식, 군주의 정치운영 이념과 운영 방식, 당시 정치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과정을 겪었고 각자 실정에 따라 각자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여러 특징에서 정치사와 관련이 매우 긴밀한 양국 군주권 강

138) 羅冬陽, 2005, <皇權與皇權政治>, 《東岳論叢》 26, 207쪽.

화 방식의 차이는 가장 강조할 만하다. 명 황제들이 집정했을 때에 자신의 독재적인 권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환관을 이용하여 군 통수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조선의 왕들은 독재적인 군 통수권을 확보하기보다 이 권력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제4장 결 론

조선 초기 軍令體系의 정비는 일찍이 급진개혁파들이 고려말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이 건국하자 재상이 왕의 신임을 받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고려 말 완성되지 못했던 군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의 첫 군사기구인 의흥삼군부가 설립되었고 재상이 이 최고 군사기구의 판사를 겸임하고 政治·軍事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의 軍令出納 절차는 재상이 왕의 허락을 받아 군령을 三軍인 中軍, 左軍, 右軍의 절제사를 통해 각 위의 衛將한테 하달했던 것이다. 의흥삼군부는 재상의 명령을 하달하는 것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태종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한층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치며 재상의 정치권력과 군사권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우선 義興三軍府가 承樞府로 개편되었다. 그 후인 태종 5년에 屬衙門制度의 실시로 ‘宰相掌發命之權’의 원칙이 폐지되었으며 병조가 승추부를 병합하였고 승추부의 독자적인 군령출납·군사감독권을 흡수했다. 이리하여 군정을 총괄하는 병조가 군령권을 흡수하여 최고 군사기구로 부상하였고 결국 태종이 병조의 군령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三軍鎮撫所를 설치하였다. 이 삼군진무소는 곧 義興府로 개칭되었다. 의흥부 시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 의식 등 대체로 군정에 관한 사항을 병조가 장악하는데 대하여 출령 등 군령사항을 의흥부가 장악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군령체계는 의흥부·삼군·십사의 선을 따라 구성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군령 출납에서 병조와 함께 왕명을 받아 각 군 총제를 통해 각 위에 출령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긴급한 군사 집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군령체계상에 의흥부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쟁이나 습진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임명된 장수는 의흥부의 총지휘를 들어야 한다.

이후 의흥부가 잠시 혁파되기도 했지만 세종 14년(1432)에 다시 삼군진무소로 복설되었다. 복설된 삼군진무소는 병조와 양립하여 세종대 전반에 걸쳐 문종·단종대에도 마찬가지로 군령상의 기능을 갖고 존속하였다. 그런데 태종 상황기부터 시작되었던 군령출납에서 병조가 더 우위에 있었다는 현상이 점점 관례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훈련진법을 맞추기 위하여 국초에 10司인 중앙군 군사를 5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세조대에 들어서 왕이 국방력과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中央에 있는 5司와 地方에 있는 각 영진군과 익군을 병합시키고 三軍鎭撫所를 五衛鎭撫所로 개편했으며 이에 中央軍과 地方軍이 원칙적으로 한 군령체계로 통합되었다. 동왕 12년(1466)에 관제개혁으로 五衛鎭撫所가 五衛都摠府로 개칭되고 이리하여 조선 초기 軍令體系의 정비가 일단락되었다. 새로운 군령체계 하에서 군령출납할 때에 병조와 오위도총부가 함께 군령을 출납하는 것이 아니라 병조가 우선 왕명을 받아 그 후에 도총부에 移文하고, 도총부에서 衛將에게 移文하는 절차가 확정되었다. 군사에 대한 감독권도 병조와 진무소가 함께 행사하고 있었다. 발병권을 지니는 오위도총부는 왕명 출납에 병조보다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오위 병력에 대한 入直, 行巡을 監督하는 것이 그 실제 임무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조가 內禁衛와 兼司僕을 독립아문으로 승격시켰고 親兵세력을 따로 만들어냈다.

명나라에서는 朱元璋이 전쟁에 효율적인 군사동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사를 파악하는 최고 군사기구인 大都督府를 설치하였다. 中書省의 군령권을 분리하기 위하여 대도독부를 계속 발전시켰고 그 후에 동시의 대도독의 군권독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좌·우 도독으로 하여금 대도독을 대체하였다. 대도독부시기에 軍令上 황제가 명을 내려 중서성과 대도독부가 함께 군령을 하달했고 반대적으로 군기에 대해 상주하려면 중서성이든 대도독부이든 반드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군대를 동원하고자 청할 수가 있었다. 즉 대도독부는 군 통수체계에서 최상위자로 처하고 있었지만 발병기능을 독점하고 있지 않았다.

홍무 13년(1380)에는 胡惟庸 사건을 맞이하여 중서성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도독부를 오군도독부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군이 前·後·左·右·中軍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오군도독부는 친군위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

다. 이때에 군령출납 절차는 황제가 발하는 명은 병부가 먼저 받아 오군도독부로 移文하게 한다. 병부를 통해 받았던 군령을 다시 각 都司、衛所에 하달했다. 또한 황제한테 출병을 청하는 기구는 오군도독부가 아니라 병부로 되었다. 친군은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軍政上 병부의 관할을 받았지만 軍令上 황제한테 명을 직접 받아서 시위 등 직책을 담당했다. 즉 친군 각 위는 발병과 장병의 역할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었다.

영락시기부터 병부와 환관집단의 성장과 새로운 巡撫·總督制度의 도입으로 오군도독부가 在京 衛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衛所兵에 대한 감독권과 군령출납 권한도 점점 상실하였다. 또한 기구 안에 점점 많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는 자가 도독직이 임명되어 영종대에 이르러 勳臣과 공신의 후예로 하여금 五軍都督府를 관장하게 하는 체제가 확정되었으며 기구는 훈신 등을 우대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朝鮮 初期와 明 初期의 軍令體系의 整備過程과 變化相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군 통수체제의 발전 지향점이 거의 유사하였음을 알아보았다. 첫째, 중앙군과 지방군을 모두 통합시키는 경향이 상이하지 않다. 둘째, 왕이나 황제가 친군세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군사와 분리시키는 지향도 똑같았다. 셋째, 군령체계를 정비할 때 조선과 명 모두 재상이 가지고 있던 政治·軍事權을 분리시키고 또한 軍令權을 분산시키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즉, 정비·변화과정에서 조선과 명의 환경이나 상황이 상이했지만 결국 같은 지향점을 보였고, 이는 군사력이 정치와 긴밀하다는 보편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향점이 비슷해도 개국방식, 군주의 정치운영 이념과 운영 방식, 당시 정치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비과정에서 각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중에 군령권에 대한 배분에서 나타났던 조선 재상권의 변화, 병조와 오위도총부의 양립구조와 명 환관의 모습은 각국의 정치적 특징과 군주의 군주권 강화방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명의 황제는 독재적인 권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황권에 부속하고 있는 환관을 이용하여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황권을 강화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선의 왕들은 전통적인 관료체제를 이용하여 군사기구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 하며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그 왕권을 확보

하고 있었다. 같은 동아시아 군주체제하에 왕권과 황권은 논리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왕권을 이용하여 펼치는 조선의 정치와 황권을 이용하여 펼치는 명의 정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一 : 사료

1. 한국사료

1) 연대기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

2) 법전류

《經國大典》

2. 중국사료

1) 연대기류

《明實錄》 - 《太祖高皇帝實錄》 《太宗文皇帝實錄》 《宣宗章皇帝實錄》 《英宗睿皇帝實錄》 -

2) 법전류

《明會典》

3) 기전체류

張廷玉 (清), 《明史》

查繼佐, 《罪惟錄》

4) 기타

朱元璋, 《御製資世通訓·臣用章》

《(萬曆)河州志》.

鄭曉 (明), 《今言》.

王圻 (明), 《續文獻通考》.

王世貞 (明), 《弇山堂別集》.

孫承澤 (明), 《天府廣記》.

黃宗羲 (清), 《明夷待訪錄》.

夏燮 (清), 《明通鑒》.

二. 연구논저

1. 한국

1) 저서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尹薰杓,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崔承熙,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朴元煥,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오중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2) 논문

차문섭, 1964, <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 《史學研究》 18.

南都泳, 1966, <尙乘局에 대하여 -鮮初의 內司僕寺·兼司僕 成立에 대한 一考->, 《東國史學》 9·10.

柳昌奎, 1992, <太宗代 軍指揮體系>,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從(上)》.

韓忠熙, 1994, <朝鮮初(태조2년~태종1년) 義興三軍府研究>, 《계명사학》 5.

류주희, 1999, <王子亂 朝鮮 開國功臣>, 《朝鮮時代史學報》 11.

李在勳, 2003, <태종 • 세종대의 삼군도총제부>, 《사학연구》 69.

張熙興, 2003, <朝鮮初期 宦官制의 整備와 運營>, 《慶州史學》 22.

李在勳, 2005, <朝鮮 太宗代 三軍鎮撫所의 成立과 國王의 兵權掌握>, 《史叢》 61.

권영국, 2009, <고려전기 군정·군령기구의 정비>, 《역사와 현실》 73.

최종석, 2010, <조선초기 "시왕지제(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52.

윤훈표, 2011, <조선전기 진법훈련 체제의 변화>, 《역사와 실학》 46.

문중양, 2013,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장인성, 2014, <중화체제와 '사대'-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

오수창, 2016, <조선왕조 개창의 형식과 논리-선양론(禪讓論)과 추대 사실의 검토>, 《동방학지》 176.

이헌창, 2017,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론>, 《경제사학》 41.

2. 중국

1) 저서

李渡, 2004, 《明代皇權政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晁中辰, 2008, 《明成祖傳》, 人民出版社.

商傳, 2013, 《明太祖朱元璋(上)》, 浙江文藝出版社.

2) 논문

南炳文, 1983, <明初軍制初探>, 《南開史學》 1,2.

冷冬, 1992, <略論明代軍事制度之轉變>, 《汕頭大學學報人文科學版》 4.

方志遠, 1989, <論明代宦官的知識化問題>, 《江西師範大學學報》 3.

_____, 1993, <明朝軍隊的編制與領導體制>, 《明史研究》 3.

范中義, 1998, <論明代軍制的演變>, 《中國史研究》 4.

李新峰, 2001, <明代大都督府略論>, 《明清論叢》 2.

陳時龍, 2003, <論大都督府之創設>, 《軍事歷史研究》.

馮建勇, 2005, <明代巡撫制度及其作用>, 《湖南科技學院學報》 26.

羅冬陽, 2005, <皇權與皇權政治>, 《東岳論叢》 26.

王世宜, 2006, <朱元璋‘重典治國’思想探析>, 《歷史學研究》 6.

彭勇, 2007, <明代衛所制度流變論略>, 《民族史研究》.

胡丹, 2008, <洪武朝內府官制之變與明初的宦權>, 《史學月刊》 5.

黃阿明, 2010, <明建國前朱元璋集團的軍事領導機構及其演變>, 《史林》 3.

曹循, 2010, <明代武職階官化論述>, 《史學集刊》.

_____, 2012, <論明代勳臣的培養與任用>, 《雲南社會科學》 3.

王劉波, 2016, <明代京營制度變遷考>, 《史料研究》.

Abstract

The Comparison of the Building Process of Military Command System between Early Joseon Dynasty and Early Ming Dynasty

Name : RUAN XINJIA

College of Humanities Dept. of Korea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ilitary power is close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political power. If the man in power fails to make a reasonable allocation of the military's supreme command authority, his ruling power will be subject to a certain degree of threat. Therefore, it is undoubtedly important matter for a new regime to organize the military as well as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o achieve the smooth operation of military commands.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the status of the regime and the king's sovereignty at that time also can be explored.

This paper focuses on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me 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Meanwhile , it will be compared with the situation in the early Ming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so that there will be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niqu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Joseon Dynasty at the time.

First of all, this paper portrays the preparation process and changes in the military comm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at the establish stage under the Sino-system. At the same time, the operation mode of military commands under this system is analyz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both countries were similar. Firstly, the tendency was to align the Central Army with the local military in the same military command system. Secondly, both the king of Joseon and the emperor of the Ming had the tendency to separate the pro-military forces from the entire military organization and realized the independence of pro-military organizations. Thirdly,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he separation of the political forces and the decentralization of military power were made for the purpose. The military command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had been adjusted and constantly changed in different environments, but the directions of development were the same. This is because military power and politics are inextricably linked.

Although the directions of development were similar, due to the different ways of establishing the country, different political operating concepts, and a last resort political situation, each had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 preparation process.

First of all,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Joseon first adapted the central army, and then included the local army in the central military command system. The Ming Dynasty initially included both the central army and the local military under the same military command system. Secondly, the appearance of Joseon's

independent pro-military organization had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relative to the Ming Dynasty. Thirdly, in the process of disintegrating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the situation in Joseon was a process in which the dictator changed from a prime minister to a k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the emperor did not give his authority to his officials. At the same time, Joseon's separation of political forces and the decentralization of military power was longer and more complex than the Ming Dynasty. In addition, during the Taejo period, the political forces and the military forces were not broken but they were separated when it came to Taejong period. This was not the same as the situation in which the Ming Dynasty began to separate his political and military forces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the dynasty. More importantly, during the process of formally determining the military command system, Joseon had appeared in the military command system where ByoungJo and the Sam Gun Jin Mu So (OWe Do Chong Bu) were standing side by side. The Ming Dynasty not only had the presence of Byoung Bu, but also the existence of the eunuchs group. From here, it can be more obviou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kings' sovereignty. In order to achieve dictatorship, th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used the power of eunuchs attached to the imperial power to bring all the power of the state together. The king of Joseon used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system to make the institutions and institutions check each other and strengthen his power through decentralized institutions' power.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royal power and imperial power under the monarch system of East Asia, bu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s of the kings' use of royal authority and the politics of the imperial administration of imperialism.

keywords : Early Joseon Dynasty, Early Ming Dynasty,

military command system, building process, comparison,
imperial power

Student Number : 2015-22279